

월간

재정포럼

2014. January_ Vol.211

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갑오년의 재정개혁: 1894, 1954 그리고 2014년/ 옥동석

현안분석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윤성주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이혜원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라트비아, 유로존 18번째 회원국 합류

정책흐름

2014년 경제정책방향

CONTENTS

권두칼럼

갑오년의 재정개혁: 1894, 1954 그리고 2014년 · 옥동석 02

현안분석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 윤성주 08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 이해원 25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4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 논의 외 51

정책흐름

2014년 경제정책방향 72

국회 확정 2014년 예산 주요 내용 93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98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113

이슈&포커스

연 8,000억 탈세 면세유 제도 수술 외 121



갑오년의 재정개혁: 1894, 1954 그리고 2014년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120년 전 갑오년(甲午年), 1894년. 비로소 조선 왕조는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100여 년간 누적된 사회적 모순들을 타파하고 외세 침탈에 대응하고자 각계각층에서 분출한 수많은 개혁 요구들을 이 갑오년에 수용한 것이다. 서구제국이 산업혁명을 완수하고 일본이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근대화의 고삐를 죄던 1800년대에, 우리나라는 봉건정치의 폐단과 연속된 민란(民亂)으로 정치적 불안정만 거듭하고 있었다. 19세기가 막바지에 달할 즈음에야 조선 왕조는 국내 제정파가 망라된, 전문 관료 중심의 다수결 회의체로서 초정치적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근대적 개혁조치들을 일거에 단행하였다. 이를 ‘갑오경장’ 또는 ‘갑오개혁’이라 부른다. 당시 ‘군국기무처’는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화폐개혁, 과거제 폐지, 재정개혁 등 208건의 제도개혁을 단 4개월 만에 해치워버렸다.

근대적 재정개혁의 시발점이 된 ‘갑오경장’

이때 경제·사회부문의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는, 천 년간 지속된 봉건왕조의 재정제도를 근대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숭한 민란들이 조세부담, 병역의무, 구휼제도의 문란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재정제도 근대화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때 취해진 중요한 재정개혁 조치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세징수와 재정지출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 왕조에서는 개별 국가기관이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여 지출하는 ‘각사자변(各司自辯)’의 원칙이 적용되었는데 조세의 부과와 징수, 재정지출의 항목과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조세 외에도 ‘무명잡세(無名雜稅)’로 불리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조세들이 거의 자의적으로 징수되었고, 또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모호하여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던 것이다.

둘째, 조세금납제(租稅金納制)를 시행하여 곡물, 노동력, 특산물 등 현물납부에 기초한 봉건적 조세제도를 현금납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세금납제를 통해 세목과 세율을 단일 기준으로 통일하여 세금의 파악, 징수, 수송, 납부에 이르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물론 조세금납제의 보다 근본적인 목표는 화폐경제를 통해 상업자본을 축적·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셋째, 통합재정의 원칙을 확립하여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총체적으로 계리하고 또 이들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탁지아문’을 설치하였다. 물론 조선 개국 초기에는 호조(戶曹)가 국가재정을 총괄하였는데, 후기에 들어서며 호조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들이 늘어나 국정이 문란해졌다. 갑오경장에서는 호조를 ‘탁지아문’으로 개편하고, 탁지아문이 회계·출납·조세·국채 및 화폐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재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넷째, 세입과 세출에 대한 1년 단위의 예정적 계획으로서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의 분리를 도모하였다. 봉건왕조에서 국왕의 전제권이란 국왕의 임기응변적 의지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왕실사무와 국가 사무를 구분함으로써 사전 계획과 절차에 따라 관료적 통제가 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실패한 개혁이 주는 교훈

갑오년의 이 네 가지 제도개혁은 근대적 재정제도를 최초로 발전시킨 영국의 역사를 조명할 때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조세의 법제화 원칙은 1217년의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에서 처음 채택되었지만, 국왕의 사무와 국가의 사무를 재정적으로 구분하는 시도는 19세기 초반에야 겨우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적 재정제도가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했음을 감안한다면, ‘군국기무처’의 개혁안 작성·의결·공포는 매우 급진적이었다. 이 때문에 갑오경장은 국내 제 정파의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켜 대부분 내용들이 법령상으로는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국내 제 정파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지만,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물론 이는 고종(高宗)의 나약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개혁의 구심점이 확고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서구문물을 발빠르게 수용한 일본이 조선 침탈의 은밀한

.....
 따라서 시간이
 주어질 때 스스로
 발빠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외부의 강압에 의한
 굴종과 오욕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갑오경장의
 역사는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

**1954년 갑오년,
대한민국은 독립한
여느 신생국과
달리 자유경제체제를
전폭 수용하였다.**

.....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이 주어질 때 스스로 발빠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외부의 강압에 의한 굴종과 오욕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갑오경장의 역사는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120년 전 갑오경장은 이후 국권 상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실행해보지 못한 실패한 개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또 다른 갑오년, 1954년에는 우리가 스스로 경제와 재정개혁을 추진하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1954년은 해방 이후 9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 이 9년의 기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해방 직후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 해외 귀환민과 북한 피난민의 엄청난 유입, 통화량 남발과 산업 마비에 따른 경제적 혼란이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후에도 이러한 혼란은 지속되었으나, 2년 뒤 1950년에는 다소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또 다시 전쟁의 혼란을 겪게 되었다.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전 국토가 황폐화된 후에야 전선이 교착되며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비로소 대한민국은 전후 부흥책을 체계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자유경제체제 확립한 1954년 개혁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갑오년,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립한 여느 신생국과 달리 자유경제체제를 전폭 수용하였다. 해방 전후의 이념적 논란을 완전히 탈피하고 자유기업 원칙, 기업의 자기부담 원칙, 자유가격제 등 자유경제체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1954년 헌법개정과 ‘신국책(新國策)’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우선 사회주의 색채가 짙었던 제헌헌법의 재정조항을 개정하였다. 해방 전후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제헌헌법은 사회주의를 과도하게 수용하였으나, 1954년 헌법개정(일명 4사 5입 개헌)을 통해 경제체제에 대한 이념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제헌헌법은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수도·가스 등 주요 산업을 국영화하도록 하였고(제87조), 또 국민생활의 필요에 따라 민간기업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8조). 1954년에 이들 조항을 폐지·개정하여 중요 산업의 국유화 원칙을 포기하고, 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헌법개정뿐만 아니라 정부는 1954년에 공공기관과 공기업(당시 용어는

‘국영 및 관리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이는 ‘신국책’으로 명명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국영기업체 지정 제도를 없애고, ② 주요 공기업의 한국은행 직접 차입을 금지하였으며, ③ 해방 직후 국가에 귀속된 귀속기업체(600여개)들을 과감하게 민간에 불하하고, ④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다수 공기업(은행, 조폐공사 제외)들을 민영화하며, ⑤ 공기업(74개)에 대한 정부보증·유자, 원조물자 특혜배정, 주무부처의 행정적 간섭 등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국책’의 공공개혁으로 형성된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이후 60년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
**지금부터 60년 뒤,
 2074년!**
**우리의 후손들은
 2014년 갑오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또 다른 갑오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

1894년과 1954년, 이 두 번의 갑오년 재정개혁은 모두 일본과 미국이라는 타국의 강요에 의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이 둘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1954년의 성공한 개혁에서는, 우리가 외세의 국권 침탈에 시달리지 않아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자유와 개방이라는 선각자들의 판단과 선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강력한 (비록 독재적이었지만) 리더십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제, 2014년 또 다른 갑오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고도 성장기는 막을 내리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조화와 공존을 위협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선각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개혁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은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120년 전 실패한 갑오경장의 교훈을 다시 새긴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강압에 의한 굴종과 오욕만이 우리를 기다린다.’ 지금부터 60년 뒤, 2074년! 우리의 후손들은 2014년 갑오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KIPF**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이혜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jyoon@kipf.re.kr)

I. 서론

기초연금제도 도입과정에서 주무장관이 사퇴하고,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이 여·야 간 논쟁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등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쟁점과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면, 정치적 차원에서의 논쟁으로 인하여 제도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다소나마 왜곡되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공약 등과 같은 정치적 사항을 배제하고 기초연금제도 자체만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¹⁾

제II장에서는 기초연금 관련 기존의 제도들을 알아본다. 즉, 노령수당·기초연금, 그리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목적·대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도입 준비 중에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제도 방안을 소개하고, 제IV장에서는 기초연금제도 관련 내용 중 국민연금과의 연계, 물가연동 급여체계, 지방정부 재정부담 등 현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기초연금제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기초연금의 역사적 배경

2013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소득보장²⁾에 대한 것

1) 기초연금 관련 정부안이 수정·보완되고 있다. 본 원고는 2013년 10월 현재 정부제공 자료, 현황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2) 고령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소득보장과 건강보장이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보장과 관련이 있고,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장과 관련 있다. 원고에서는 소득보장 관련 내용을 다룬다.

으로 1991년 도입된 노령수당, 1998년에 도입된 경로연금, 그리고 2008년 도입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령수당제도 → 경로연금제도 → 기초노령연금제도
→ 기초연금제도

1989년에 시행된 「노인복지법」은 실질적으로 노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노령수당제도는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목적(한국노동연구원, 1995)”으로 1991년에 도입되었고, 도입연도인 1991년 7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1997년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즉,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연령뿐 아니라 소득수준 또한 반영하였으며, 제도 마지막 연도인 1997년의 지급률은 대상 노인의 9.0% 수준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35,000원, 그리고 80세 이상의 거택·시설보호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1〉 노령수당 지급자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70세 이상 노인	지급대상	수급률
1991년	1,347	76	5.6
1992년	1,407	191	13.6
1993년	1,472	181	12.3
1994년	1,540	n.a.	n.a.
1995년	1,608	193	12.0
1996년	1,695	174	10.3
1997년	2,929	265	9.0

주: 1997년은 65세 이상 노인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서」, 각 연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것으로
1991년 도입된 노령수당,
1998년에 도입된 경로연금,
그리고 2008년 도입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노령수당제도를 대신하는 경로연금제도는 1997년 7월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여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보건복지부, 2002.4)”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로연금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보호 대상자와, 65세 이상자 중 저소득자로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 가계소득, 가구원 수,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에는 감액제도가 적용되었다. 〈표 2〉에 의하면 제도 첫 해와 마지막 해인 1998년과 2007년의 대상자 수는 각각 623,479명과 654,227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수급률이 20.4%에서 13.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급자 중 저소득노인의 비중은 1998~2007년 사이에 60.1%에서 37.9%로 감소한 반면, 기초생활보장노인의 비중은 39.9%에서 6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경로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A)	623,479	574,700	565,898	583,755	585,000
기초생활보장노인	248,764	288,303	333,561	345,769	339,000
	(39.9)	(50.2)	(58.9)	(59.2)	(57.9)
저소득노인	374,715	286,397	232,337	237,986	246,000
	(60.1)	(49.8)	(41.1)	(40.8)	(42.1)
A/65이상 노인	20.4	18.0	16.7	16.4	15.5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A)	619,592	618,531	619,385	612,736	654,227
기초생활보장노인	346,113	360,360	378,149	387,286	406,488
	(55.9)	(58.3)	(61.1)	(63.2)	(62.1)
저소득노인	272,479	258,171	241,236	225,470	247,739
	(44.0)	(41.7)	(38.9)	(36.8)	(37.9)
A/65이상 노인	15.6	14.9	14.2	13.4	13.6

주: 2007년은 계획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2007.

“
**연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10월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신할
 「기초연금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경로연금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2013)』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하고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제도의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제도 도입시기인 2008년 1월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를 지급대상으로 하였으나, 2008년 7월부터는 수급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는 지급범위를 추가적으로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소득·재산 수준 등이 반영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고 있다.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을 의미하는 A값의 5% 수준이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부부감액제도 및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과분 감액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며,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립도 정도 등을 고려하여 40~9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초노령연

금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9년부터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수급률은 2009년 68.9%, 2010년 67.7%, 2011년 67.0%, 2012년 65.8% 등 4년간 평균은 70%에 못 미치는 67.3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연 도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수급률
2008년	5,069,273	2,897,649	57.2
2009년	5,267,708	3,630,147	68.9
2010년	5,506,352	3,727,940	67.7
2011년	5,700,972	3,818,186	67.0
2012년	5,980,060	3,933,095	65.8

주: 수급자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본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2013년 10월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기초연금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다.

Ⅲ. 기초연금제도 개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제1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관련 설명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법안이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②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 ③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자산조사)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다. 즉,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포함

“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근로소득, 개인저축,
그리고 금융자산 외의 일반재산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가 된다.
 ”

한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근로소득, 개인저축, 그리고 금융자산 외의 일반재산 등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가 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 수준은 (i) 모든 세대 모든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공적연금 수입 보장을 의미하는 기준연금액 부분, (ii)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입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 부분, (iii)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보험료 납부액과 상관없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하여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A급여, 그리고 (iv) 향후 A급여의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의 급여액 감분 보상을 고려한 조정계수 $\frac{2}{3}$ 의 함수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text{기초연금액} = \left(\frac{\text{기준연금액}}{2014\text{년 현재기준 } 20\text{만원}} - \frac{2}{3} \times A\text{급여} \right) + \frac{\text{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2014\text{년 현재기준 } 10\text{만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으므로 A급여 부분이 0이 되어 기초연금액은 2014년 기준 기준연금액인 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세로 충당되며,
 국민연금기금 부분이 기초연금에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
 「기초연금법안」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인 10만원을 수급하며, 추가적으로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A급 여에 조정계수를 반영한 부분을 차감한 액수(기본연금액)를 수령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기준연금액에서 차감되는 대신 부가연금액을 지급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차등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기금)과는 분리되어 있다. 즉,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세로 충당되며, 국민연금기금 부분이 기초연금에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 「기초연금법안」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기초연금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598만명이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자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207만명을 제외한 391만명이다.³⁾ 대상자 중 90.28%인 353만명은 2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대상자 중 5.12%인 20만명과 4.60%인 18만명은 각각 15만~20만원, 10만~15만원을 수급개시 전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 인구 중 59.03%가 최대 연금액 수준인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IV. 기초연금 관련 쟁점

1. 국민연금과의 연계

기초연금과 관련된 주요 논쟁의 첫 번째 이슈는 국민연금과의 연계관계이다.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기초연금법안」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액 및 수급액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관된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 부분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다.

기초연금액 산식은 기본연금액 부분인 기준연금액과 A급여,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⁴⁾ 이 중 A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3년간 평균소득 수준을 의미하는 A값⁵⁾의

3) 계산상으로는 598만명의 30%는 179.4만명이며, 207만명은 598만명 중 34.6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정부 자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9.25)에 나타난 내용을 인용한다.

4)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 또한 각각 국민연금 A값의 10%와 5%로 수준으로 결정된다.

5) A값: 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와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부담액과 관련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함수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A급여가 증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begin{aligned} \text{기초연금} &= f(\overbrace{\text{기준연금}}^{+}, \overbrace{A\text{급여}}^{-}, \overbrace{\text{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 \\ A\text{급여} &= g(\overbrace{A\text{값}}^{+}, \overbrace{\text{가입기간}}^{+}) \\ \frac{\partial \text{기초연금}}{\partial A\text{급여}} &< \frac{\partial A\text{급여}}{\partial \text{가입기간}} \end{aligned}$$

즉,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았던 무연금자이거나 가입연도가 11년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기초연금 수급액 수준인 20만원을 수급하게 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 이상부터는 매년 약 1만원씩 삭감되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들은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임의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이 가입을 하지 않거나 현재 가입한 사람들도 탈퇴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적연금체계인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과는 무관하게 가입기간에만 연동하여 연금액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에는 재정적 한계가 존재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 완화 및 미래세대에 대한 안정적 공적연금 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관된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 부분으로,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

정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안에 찬성하는 측은 국민연금이 아직 상속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국민연금이 가입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였거나 또는 가입할 기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의 가입을 유지하지 못한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저소득자로서 간주되는 미가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일수록 연금수급액이 많으므로 가입기간에 기준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기초연금액에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연금액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급액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한 순수급액이 국민연금 단기가입자의 경우보다 더 크게 증가하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한 순공적연금액은 단기가입자나 미가입자의 기초연금보다 크다는 것이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민연금이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미가입 및 탈퇴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사회보험의 형태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
**소득인정액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만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하여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기초연금법안」 제4조3항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

제도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노인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소득수준·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제도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기간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단,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시점에 18세 이하였던 대상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으므로,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고 65세 이상 모두에게 동일한 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2차 개혁에서 결정된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인하여 따른 보상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 2차 개혁이 2007년에 있었는데, 기초연금이 앞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또한 동일한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기초연금이 소득대체를 인하여 따른 보상개념이라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하여 동일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단,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를 인하여 따른 보상개념만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등 기초노령연

금 관련 정부자료에는 그와 같은 보상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액 등 기타 재산·소득관련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준비 방법으로 가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기인한다. 「201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고령자 가운데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31.8%로 가장 높다. 그러나 예·적금, 부동산,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각각 27.5%, 13.6%, 10.8%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연금만으로 노인들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성명재(2011)에 의하면 자산의 규모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같이 주로 노동공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최고점을 나타내는 연령대가 주로 40대 후반~50대 초반에서 형성된다. 반면에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평균적인 규모가 더 커져서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성명재, 2011)”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만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하여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기초연금법안」 제4조3항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기초연금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액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논쟁은 기초연금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함께 고려한 총공적연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제도의 설계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낮게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다. 정부의 주장, 즉 국민연금 수급액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한 순수급액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하면 무가입자 또는 단기가입자보다 더 많은 공적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계산에서 세부담은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계산 과정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기여액으로 볼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연금을 찾을 수 없다. 고령자 증가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인하여 국민 1인당 기초연금과 관련된 조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부담액의 증가를 고려한 순기초연금액 부분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계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 수급액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논쟁은 기초연금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함께
 고려한 총공적연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

2. 물가연동 급여체계

기초연금과 관련된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실질) 임금상승률 반영 여부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임금과 물가에 연동되어 인상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즉,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모두 반영된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⁶⁾의 3년간 평균액)에 연동된다. 반면,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최동익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과거 실적치는 물가상승률이 국민연금 A급여 증가율보다 높았으나,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에서는 A급여의 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추계되고 있어, 20년 후인 2034년에는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국민연금 A급여 연동방식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최동익 의원실, 2013. 10. 7).

〈표 4〉 국민연금 A급여 및 물가 변동률 추이 · 전망

(단위: %)

	08	09	10	11	12	평균증가율	...	20	30	40	50	평균증가율
국민연금 A급여 증가율	3.6	4.4	2.3	1.8	3.7	3.1	...	7.0	5.7	4.2	4.0	5.2
소비자물가 변동률	4.7	2.8	3	4	2.2	3.3	...	3.4	2.5	2.0	2.0	2.5

주: 2020년부터의 자료는 전망치.
 자료: 최동익 의원실(2013.10.7) 〈표-2〉.

6)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유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납입기간의 보험금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연금수급 개시 이후의
 물가상승에 대한 보전이다.**
 ”

이에 대하여 정부는 기초연금법안 제6조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므로, 두 방식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 역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되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해명).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연금액) ①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안 제6조(연금액 조정 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초연금액(이하 “연금액”이라 한다)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컨대, 정부가 5년마다 연금액의 적정수준을 반영·조정한다고 하더라도 A급여 이상의 수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임금상승률이 0보다 작지 않는 한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이 노령연금보다 수급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기초연금액 산식에 의하면 연금액을 높이는 기준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 부가금액은 물가만 반영하는 한편, 임금 및 물가 변화율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A값은 연금액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물가상승률 논쟁에 있어 국민연금수급과 기초연금수급 사이의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이다. 즉, 젊어서 저축을 하고 이것을 노후기간에 이용하는 것이 개인이 연금에 가입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저축액이 물가 상승분만큼 증가하여 구매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이 예측될 때 화폐의 가치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과 같은 장기저축에 있어 물가반영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⁷⁾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유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납입기간의 보험금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연금수급 개시 이후의 물가상승에 대한 보전이다.

A급여는 연금개시 시점 기준 최근 3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실질임금 및 물가수준

7)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하여 급여가 결정되는 A급여와,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는 B급여로 구성된다. 여기서 A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즉, 모든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중 일정액을 수급개시 시점에 있는 연금수령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자들의 경우 자신의 소득수준이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보다 낮으므로 납입 보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액을 수령하게 되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수준은 평균소득수준보다 높으므로 이와 같은 혜택이 적게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B급여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 및 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비례하여 가입자들 사이에 차별적으로 결정된다. A급여는 가입자의 연금개시 직전 3년 동안, 그리고 B급여는 납입기간 동안에 대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가입자들 및 개인의 실질임금 수준이 변화한다. 개인이 연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의 경험누적·개인적 역량의 증가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며, 이는 A급여와 B급여 모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즉, A급여와 B급여 모두 실질임금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랜 납입기간 동안 납부된 보험료 또한 실질임금의 상승분이 반영된 보험료가 재평가 과정을 통하여 물가 변동을 반영하게 된다(B급여). 즉, 공단이 개인에게 연금지급을 개시할 시점에서는 개인의 납부기간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⁸⁾ 따라서 국민연금액을 구성하는 A급여와 B급여 모두 연금개시 시점까지의 실질임금 변화분과 물가 변동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에서 계산된 개인의 연금액이 향후 물가 변동 시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가수준 변화분만큼을 지원하고 있다.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연금수급 개시시점의 연금액만을 65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급할 경우 노인들의 구매력은 물가가 변동함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는 노인들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서 물가수준 변화분 만큼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첫 번째 부분,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금액 책정시점에서는 실질임금 상승분과 물가 변동부분이 모두 반영되는 반면 두 번째 부분, 즉 연금개시 이후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은 물가 변동분만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현재 물가수준 반영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의 물가 변동에만 연계되어 있는 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실질임금 및 물가 변동분을 모두 반영한 국민연금 A급여에

“
**현재 물가수준 반영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의 물가 변동에만 연계되어 있는
 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실질임금 및 물가 변동분을
 모두 반영한 국민연금
 A급여에 기준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

기준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A급여는 실질임금 변동분의 일부⁹⁾와 물가 변동분 모두를 고려하고 있어 물가 변동에만 연계된 기초연금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또한 수급개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영된 수급액에 대하여 구매력 유지를 위한 물가수준 변화분만큼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는 수급자들에게 있어 실질생산성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임금 상승률 부분을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에서 수급자들에게 물가상승률 이상의 실질임금 상승률 부분을 더해 주는 방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자체가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임금의 상승 근거가 없는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분¹⁰⁾을 더해주는 것에서는 논리적 적합성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급개시 이후 물가 변화에만 연동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기초연금에만 실질임금 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를 염두에 둘 때,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실질임금 상승

8)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으로 가입한 경우, 공단을 이것을 2012년의 현재가치인 약 486만원의 소득액으로 재평가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한다.

9) 납입액 상한이 존재하여 실질임금 상승의 모든 부분을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10) 국민연금 납부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지만, 상한액이 존재하여 A값이 실질임금 상승률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연행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급개시 이후
 물가변화에만 연동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기초연금에만 실질임금 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자들의 연금액이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자들의 연금액보다 적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기초연금의 경우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수급액이 감소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액이 감소하게 설계되어 있다.

기초연금법안 제7조(기본연금액) ③ 기준연금액은 매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 전국의 소비자물가 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더한다.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방정부 재정부담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조달되며, 국

비·지방비 부담비율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각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40~9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며, 나머지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3대 복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¹¹⁾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함에도 기초연금 재원분담 비율이 조정되지 않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연금 국비 추진 등을 포함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¹²⁾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하여 정부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자원 조정방안」에 나타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등의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부담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9월 24일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발표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자원 조정방안」에 의하면 취득세율의 영구적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을 보

11) 김용익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분석 결과, 3대 복지사업 변화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지방재정액 수준이 1조 2,598억원이라고 설명(2013.10.16).
 1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7차 총회(2013.10.18).

전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재 5%에서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6%p까지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실질적 과세 자주권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추가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여, 이를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소요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영유아보육 국가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 등이 있으며,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 및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효과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간주하고, 2014년에 부족한 지방정부재원은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상과 유사하나 지급액은 도입연도에 당장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현재의 중앙·지방 간 부담비를 하에서 2014년 예비비로 지원되는 한시적 지원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¹³⁾에 의하면, 2012년 기초노령연금 소요 총예산은 3조 9,725억원으로 약 75%인 2조 9,636억원은 국비로, 그리고 약 25%에 해당하는 1조 89억원은 지방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을 정부 설명자료에 포함된 지방재정 소요 추계에 적용하면, 2014~2017년 4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적¹⁴⁾으로 2012년의 2.5배 수준인 2.5조원이 소요되며, 2020년 4.3조, 2030년 12.3조, 2040년 25.0조원으로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
향후 진행될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주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중앙정부에게도 점차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재원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

〈표 5〉 기초연금 지방재정 소요 추계

(단위: 조원)

연 도	2014~2017	2020	2030	2040
기초연금 정부안(A)	39.6	17.2	49.3	99.8
지방정부 부담액 (A×25%)	9.9	4.3	12.3	25.0

주: 25%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소요예산 지방비 부담률.
 자료: 보건복지부 설명자료(2013.9)

〈표 6〉에 나타난 지역별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재정자주도가 90% 이상인 지역은 2012년 현재 1개소에 불과하다. 그리고 80~90% 미만인 지역은 7개소로 전년 대비 11곳 감소하였고, 80% 미만인 지역은 각각 221개소로 8개소가 증가하였다. 즉,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수는 감소한 반면,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의 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은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13)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14) 실제로는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4년간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표 6〉 지역별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비율 변화 (2011 → 2012년)

(단위: 개소)

구 분		시 · 군 · 구	노인인구비율		
			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
재정 자주도	90% 이상	0 → 1	0 → 1	0 → 0	0 → 0
	80~90% 미만	18 → 7	18 → 7	0 → 0	0 → 0
	80% 미만	213 → 221	109 → 110	41 → 44	63 → 67
계		231 → 229	127 → 118	41 → 44	63 → 67

주: 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일반회계 총계 연산규모}} \times 100\%$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를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5.7).

또한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인 지역은 2011년에서 2012년에 걸쳐 127개소에서 118개소로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지역은 63개소에서 67개소로 증가하였다. 즉,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함께 살펴보면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재정자주도가 90% 이상으로 높아 정부지원비율이 40%인 지역은 1개소 증가에 불과하나, 노인인구비율이 20% 이상으로 높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으로 정부지원비율이 90%인 지역은 4곳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재정자주도가 높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주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중앙정부에도 점차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향후과제

현재 논의되는 쟁점 가운데 기초연금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이와 연관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될 경우 재정소요액은 2040년에 99.8조원¹⁵⁾ 수준까지 증가한다. 또한 총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도 2040년 불변가 기준 87.7만원으로 2015년 17.4만원의 5.04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즉, 이것은 제도의 수정·보완 없이는 기초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 장기재정 소요액

(단위: 조원)

	2014~2017	2020	2030	2040
기초연금 정부안	39.6	17.2	49.3	99.8
현행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9.25).

재정문제를 포함하여 현재 기초연금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안」 및 현행 「기초노령연금

15) 현행 기초노령연금 111.6조원 보다는 작은 수준.

〈표 8〉 총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

(단위: 만원)

	2015		2020		2040	
	경상가	불변가	경상가	불변가	경상가	불변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12.1	10.5	26.5	19.5	218.5	98.1
전체 20만원	30.1	26.2	51.3	37.6	315.8	141.8
정부안	20.1	17.4	33.5	24.6	195.4	87.7

자료: 보건복지부, 설명자료(2013.9).

금법」 제1조에 나타난 목적은 상당히 추상적이며, 따라서 대상자 또한 명확하지 않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금 지급대상)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결정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불명확성은 기존의 노령수당, 경로연금과 관련하여서도 지적되어 왔다.

“...노령수당은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급여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소득보장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또는 이들 양자의 개념과는 다른 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급하는 일종의 경로수당의 개념 중 어느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가가 논란이 되었다.”(대한노인회, 「노령수당지급제도 실시방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1990. 고철기 외(1992) 재인용)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에 대하여 노령으로 인한 추가지출소요를 충당하는 부가급여적 성격과,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노인 중 차상위 저소득노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조하는 무각출연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정경희 외, 2007)

하나의 제도로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경우, 정책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상자 폭이 넓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6개년 동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¹⁶⁾ 즉,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에 따른 보

16)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노인 빈곤문제가 이전에 비하여 심화되었다는 통계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 효과가 낮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6개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재정, 2013)

“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쟁점을 벗어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대부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깔아주기’ 식 제도가 아닌,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

상개념에서의 제도인지, 아니면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정책적 목적 및 대상을 뚜렷히 할 필요가 있다.¹⁷⁾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충분한 기간동안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1999년 4월에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20년 기준으로 2019년 4월 이전에 65세가 되는 자들에 한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간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야기된 문제이므로, 서비스 제공 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다. 그리고 노인빈곤의 문제는 공공부조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¹⁸⁾

만약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에 대한 보상개념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가입자들을 대상

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강제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보험에서의 대체율 하락을 조세로 보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회보험에서의 문제점은 사회보험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문제를 보험료 상승, 수령 개시시점 연기 등의 방안으로 해결하지 않고 조세기반의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총연금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보험료를 상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기초연금에서 보전할 경우, 이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의 개념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노인들의 재산파악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지원하면 된다. 경기에 따라 노인빈곤층은 노인인구의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다. 이를 법적으로 미리 70%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OECD 2011년 자료에 의하면 노인빈곤율은 45.1%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45.1%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다. 빈곤율이 45.1%인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하위 50~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여가생활 등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하위 3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추가적인 기초연금 20만원으로는 여전히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70%가 아닌 45.1%에게 지원할 경우, 빈곤층에게 더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어 지원받는 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빈곤율을 낮

17) 이채정(2013)에서는 “기초연금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메우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두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별도의 제도로서 담당하는 기능이 모호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각지대 해소가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님을 시사한다.

18) 윤희숙(2011)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세대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퇴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출 가능성도 높다.¹⁹⁾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하지 못한 동일한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국가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어 실질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 개념에 가까울 것이며, 이것이 기초연금에 적용될 때, 노인빈곤을 또한 감소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OECD 또한 2001년 권고안에서는 기초연금이 보편적 제도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2012년 보고서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⁰⁾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는 국민들이 스스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강조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를 마련해 주면 된다.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에 한해서는 공공부조 개념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지원해 주면 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치적 쟁점을 벗어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대부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깎아주기' 식 제도가 아닌,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고철기·박능후·김성희·이경은, 『노령계층의 소득 보장방안-정부재정에 의한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경로연금사업안내(질의응답사례)」, 2004. 4.

_____,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_____,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2013.

_____, 『보건복지부소관 세입세출예산서』, 각 연도.

_____, 『통계로 본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_____, 보도자료 「2010년 기초노령연금 373만명 지급(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분석 결과 발표)」, 2011. 5. 7.

_____, 보도자료 「20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2013. 9. 25.

_____, 보도자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3. 10. 2.

_____, 설명자료 「기초연금 도입 계획」, 2013. 9.

성명재, 「소득·자산·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12.

윤성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제193호, 한국조세연구원, 2012. 7.

_____, 「기초연금제도」, 국회도서관 입법지식DB보

19) 이채정(2013)에서는 “소득 하위 70%가 아닌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등과 같이, 경제상황, 노인소득 증가추이 등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20) 이채정(2013).

고서, 2013.

윤희숙,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 방향」, 『KDI FOCUS』, 2011.10.7.

이채정, 「Ⅱ.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평가」,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국회예산정책처, 2013.11.

정경희·최현수·방효정·이현주·석재은,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7.

최동익 의원실, 「20년 후 반값되는 기초연금」, 정책자료, 2013. 10. 7.

통계청, 『2013 고령자통계』.

_____, 『장래인구추계』, 2011.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제도하에서의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1995.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 평가인증제도와 인가제한제를 중심으로 -

I. 서론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hwlee@kipf.re.kr)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2004년 약 4,000억원에 불과하던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1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결과, 2013년 보육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가 8조원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및 지원 확대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육인프라의 질적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결과 현재 적지 않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보육예산의 대부분이 당장의 보육수요를 충당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는 미비한 수준이다 보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언론에는 연일 어린이집의 이동학대, 안전사고, 급식사고 등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기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보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족 내지 불신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는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부모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보육예산 확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1) 2013년도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63%), 양육수당(21%),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10%)과 같이 당장의 보육수요를 충당하는 데 전체 보육예산의 약 95%가 투입되고 있는 반면, 보육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기능 보강,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투자는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2) 『전국 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09; 2012)에 의하면, 2009년과 2012년 사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3.68점에서 3.70점으로 0.02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3년간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비용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증가(3.37점에서 3.65점으로 증가)한 결과이지, 원장 및 교사, 내부 분위기, 급간식 관리, 부모교육 및 상담 등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된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3년 전에 비해 오히려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을
 책임질 시설의 선택에 있어서
 단순히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보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

도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생애 발달단계상 영유아기는 기초능력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및 시설이용의 보편화로 영유아 자녀가 하루의 많은 부분을 보육 시설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인적자본 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는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적절한 품질을 갖추었는지 관리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시설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을 책임질 시설의 선택에 있어서 단순히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보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중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육은 본질적으로 비영리 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우리나라처럼 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가 어려운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별 시설의 형편, 원장의 양심이나 의지에 의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애초에 사업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시작한 원장들이 많으므로 민간 시설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추구보다는 이윤 극대화과 같은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운영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가가 인건비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보육료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 시설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비해 단위 서비스당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보육서비스 품질 논란 문제가 단순히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에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서도 시설 간 자유로운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보육서비스 품질 논란 문제가 유독 두드러지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에서 생산하는 일반 재화와 달리 보육서비스의 가격은 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 내에서 책정하여야 한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³⁾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이나 선호에 따라 다양한 품질을 가진 재화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가 존재하고, 공급자는 재화의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게 된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시장에서

는 보육료 상한선으로 인해 수입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사 인건비, 식비, 시설투자비 등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듯이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경비를 인상하는 편법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선진국 중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들은 국공립 시설을 통해 국가가 직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료 상한선을 공보육 시설 이용에 국한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 보육료 상한선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로 시설운영비를 충당할 필요가 없는 국공립 시설에서나 가능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민간 시설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구분된다.

현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예산확보나 부지매입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국공립 시설의 대다수가 법인·개인 등 영리를 추구할 개연성이 큰 민간 부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공립 시설이라고 해서 보육서비스 품질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김영미, 2013). 이처럼 국공립 시설 확충만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

이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만능처방약이 아니며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하에 본 원고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지자체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밖에 보육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거나, 지면의 한계상 본 원고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육료 상한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보육료 안정화에 대한 압력이 높은 현 상황에서 보육료 상한선 폐지는 보육료 과다 인상에 대한 우려로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3) 보육료 상한선은 영아의 경우 정부 지원단가, 유아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격상한제의 근거가 되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는 1990년대 초반에 계산된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여 조정된 수치이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II.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1. 제도 설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6~2009년 1차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0~2012년 2차 시행에 이어 2013년부터 3차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인증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의 자발적 참여하에 진행되며, 구체적인 과정은 신청단계 이후 참여 확정(2개월), 현장관찰(1개월), 심의(1개월)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신청단계에서는 평가인증 지표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이 요구된다. 어린이집 자체점검은 구체적인 인증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설 스스로 미흡한 영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실천하는 사전 준비단계이다. 어린이집이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

면, 지자체가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을 확인하여 평가인증 참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때, 지자체가 확인하는 기본사항은 필수항목 9개와 기본항목 2개로 구성된다.⁴⁾

현장관찰 단계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에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평가인증 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현장관찰 실시 전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에 2주간의 관찰주관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관 중 사전고지 없이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의 자체점검 보고서, 기본사항 확인서, 현장관찰 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된다. 인증 결정은 기본사항 확인서 10%, 자체점검 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며, 각 영역별 점수와 총점이 각각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3.0점 만점 기준 2.25점 이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인증 영역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점수는 어린이집의 자체점검과 현장관찰자가 관찰한 점수의 합이다. 총점이나 각 영역별 점수가 75점 미만인 어린이집은 인증유보 판정을 받게 되며, 2개월의 재점검 기간을 거쳐 평가인증에 재참여할 수 있다.

2. 평가인증 현황

평가인증 정식사업이 시행된 첫 해인 2006년에 1,060개에 불과하던 인증 통과 어린이집은 2013년 8

4)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정원 준수,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화재·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 관련 행정처분 종료,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보육실 설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실시, 비상대피시설 설치기준 준수이다. 필수항목 9개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사항 2항목(10점 만점)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민원사항에 대한 것으로 미준수 시 항목별 감점이 이루어져 최종 점수에 반영된다.

월 기준 40,113개소로 7년 사이에 4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시행 초기에는 참여율이 높지 않았으나, 평가인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규인증과 재인증을 구분하지 않고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9,05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3분의 2를 약간 상회한다(〈표 1〉).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거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 어린이집의 86%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설 개소수나 보육아동 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지율은 약 3분의 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평가인증 심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설에 한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인증 여부가 이들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기준 이하라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증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약 3분의 1이 미인증 시설이라는 점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인증이 추후 취소되는 비율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을

“
대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약 3분의 1이 미인증 시설이라는 점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문제점

1) 자발적 참여 구조하에서의 역선택 발생

현재와 같은 자발적 참여 구조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시설의 참여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시설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시설의 자체적인 품질 담보 노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보육시설의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평가인증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그동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

〈표 1〉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2013. 8. 31 기준)

(단위: 개소, %)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2005~2013년 신규인증 통과 누적치	40,113	2,181	1,572	347	21,253	52	14,708
2010~2013년 재인증 통과	13,793	1,618	1,193	178	5,421	15	5,368
2013년 8월 말 인증유지	29,051	2,068	1,242	313	15,078	43	9,633
(전체 대비 비율)	(68.3)	(93.9)	(86.0)	(59.8)	(65.7)	(38.1)	(66.7)
인증 취소율	19.2	4.7	7.1	7.6	22.1	-	19.4

주: 전체 어린이집은 2012년 12월 기준(2012년 보육통계)
자료: www.kcpi.or.kr(한국보육진흥원), 인증 취소율은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자료(2012)

“
**평가인증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작은 반면, 평가인증 통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나 평가인증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막상 평가인증이 필요한 민간 시설보다는 이미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참여가 높아 당초 제도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현재의 평가인증제도는 강제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제도 참여 및 통과로 인한 득과 실을 계산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먼저, 평가인증 통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정부로부터 교재교구비(연 50만~120만원)⁵⁾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 있는 큰 금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평가인증 통과 여부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시설은 보육아동 모집이 용이해져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평가인증 통과로 인한 추가적인 이득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평가인증 참여로 인한 실(失)은 준비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인증 탈락 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운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는 위험성이다. 평가인증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가 방대하여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달간 보육교사들이 밤샘 업무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보육에 소홀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평가인증 참여로 인한 득과 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가인증 통과로 인한 이득이 충분히 크다고 느끼지 못한 시설에서는 굳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택하게 되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역선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평가인증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은 원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갖고 있거나 약간의 개선 노력을 통해 평가인증 통과를 기대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평가인증으로 인한 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품질이 기준 이하라 품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여 참여 자체를 포기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평가인증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작은 반면, 평가인증 통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불완전한 정보공개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보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쉽게 관찰되지 않는 요인이고, 수요자인 부모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파악에 있어서 공급자에 비해 열위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품질에 대한

5) 정부의 교재교구비 지원은 2011년부터 평가인증 결과에 연계하고 있다. 교재교구비 지원액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9인 이하 어린이집: 연 50만원, 10~20인 어린이집: 연 80만원, 21~39인 어린이집: 연 90만원, 40~60인 어린이집: 연 100만원, 6인 이상 어린이집: 연 120만원이다. 단,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60인 이하 어린이집에도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3).

불완전한 정보가 존재하여 부모의 합리적인 시설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단순히 어린이집 인증여부를 공개하던 것에 비해 정보공개의 폭이 확대된 것은 어린이집 선택 시 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자체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나, 현재의 인증결과 공개방식에는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현행 인증결과 공개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미인증 시설에 대해 미인증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미인증’으로 표기된 시설이 품질은 괜찮지만 단순히 운영자의 선택에 의해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를 안 한 것인지, 평가인증에 참여하였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영역이 얼마나 미흡한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 각각의 미인증 사유는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서 각기 다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 공개 수준하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미인증 사유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선택권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싶겠지만, 이용권역 내의 인증시설 정원이 모두 차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미인증 시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할 경우, 현재 공개되고 있는 인증여부는 반쪽짜리 정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미인증 시설이라면,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 미흡한지, 아니면 단순히 인증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과거 인증시설이었다가 품질 저하로 인증이 취소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정보의 비대칭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

“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 외에
 현재의 정보공개 방식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적극적 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

외에 현재의 정보공개 방식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적극적 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어린이집 운영자는 가급적 모든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받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처럼 미인증 사유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준 이하의 품질을 가진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기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어린이집에서만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체적으로 판단한 어린이집 품질이 기준 점수에 미달된다고 생각하는 시설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여 미인증으로 표기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미인증으로 표기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개선방안

1)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현재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의 교재교구비 지원(연간 50만~120만원)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며, 이는 자발적 참여 구조하에서 평가인증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자발적 참여 구조하에서 평가인증 참여에

“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패널티 부과 차원에서 시행되어야지
 부모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또는 향후 평가인증제도가 모든 시설로 의무화되더라도 시설의 자체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는 현재의 교재교구비 지원에서 보육료(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또는 인건비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함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사례는 호주이다.⁶⁾ 우리나라처럼 민간 시설 중심인 호주에서는 보육산업 자체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운영하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국가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호주에서 국가적 차원의 평가인증제도 운영은 수요자에게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평가인증 대상은 모든 시설이며,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정부의 보육료 보조금이 지원된다. 호주의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미화 외,

2012).

평가인증 결과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연계하는 호주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아동 수에 비례하여 시설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평가인증 결과와 보육료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원아 모집이 어려워져 시설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기 위해 품질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방법에 있어서 미인증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증 시설에 대해서만 부모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평가인증 시설 중 원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제로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용권역 내 인증 시설의 정원이 모두 차서 불가피하게 미인증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인증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패널티 부과 차원에서 시행되어야지 부모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피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평가인증 결과에 연계할 수 있는 재정지원으로 어린이집 시설지원비나 인건비 지원을 제안한다. 부모의 보육

6) 호주 보육산업의 주요 공급자는 대규모 영리법인이며, 국공립 시설이든 민간 시설이든 정부에 의한 보육료 가격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료 부담은 동일하게 지원하되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 서만 어린이집 시설지원비(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나 인건비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보조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 의무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자발적 참여 구조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시설의 참여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시설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제로 평가인증이 필요한 민간 시설의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으로 보육 시설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된다. 평가인증제도는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의 최소한의 품질 담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실효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모든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평가인증 참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평가인증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인증 참여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들고 있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보육의 질 저하 및 우수 인력의 이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참여 시 요구되는 서류의 양을 필수서류 위주로 대폭 간소화하는 등 평가인증 준비에 요구되는 업무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

“
**평가인증제도는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의 최소한의
 품질 담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실효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하다. 또한, 평가인증 수수료 부담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규모의 가정 어린이집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평가인증 수수료를 시설에서 부담하는 대신 보육예산 중 평가인증사업에 배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과정 내실화

평가인증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모든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인증 지표와 운영과정을 내실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3차 시행에 접어들면서 평가인증제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설계나 운영과정 측면에서는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평가항목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중요한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하에서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5개 영역에 55개 항목,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6개 영역에 70개 항목이다.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현장관찰로는 하나하나 점검하기에 부족할 만큼 항목의 개수가 많다. 또한, 평가지표 중에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예: 안전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단계의 지자체 점검사항과 중복된다.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본사항은 지자체 점검 단계에서 검토하고, 현장관찰일 당일에는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과 교수법’ 영역과 같이 보육서비스의 질

“
**현재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에서
 인증 통과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시설의 점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을 관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전국 4만 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의무화를 적용한다면 막대한 평가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수적인 지표 위주로 평가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평가인증 점수 총점에 반영되는 내역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현재 총점 중 25%가 반영되는 심의위원회 의견서는 이전 평가단계(어린이집 자체점검, 지자체 기본점검, 현장관찰) 보고서를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는 것으로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심의위원회는 각 단계의 평가서를 검토하고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되 심의위원회 의견서의 반영 비율은 축소하고, 대신 현재 총점 중 55%를 차지하는 현장관찰 보고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총점에서 10%가 반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자체점검 보고서의 평가내용이 실효성을 갖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인증 점수가 평상시 보육의 질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현장관찰일은 2주간의 관찰주기를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불시 방문하고 있다. 이는 2차 시행까지 현장관찰일을 미리 통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2주의 관찰주기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미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평가인증 점수는 평상시 보육의 질을 정확히 대변하기보다는 평가지표에 대한 준비를 잘 한 결과일 수 있다.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찰주기를 정하지 않고 현장을 방문하고, 평가인증이 부여된 후에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평가인증 당시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사후점검제가 도입되어 불시 방문 시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인증이 취소되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4) 정보 공개수준 확대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 결과 공개는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나,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어린이집 선택과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만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에서 인증 통과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시설의 점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 참여를 의무화하고, 미인증 시설이라도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부모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 미흡한 품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Ⅲ. 지자체별 어린이집 인가제한

1. 제도 설명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설치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보육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어린이집 인가 판단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인가제한의 판단기준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보육수요 또는 현원보다 많은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인증을 미만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인증 목표를 미만이거나(보건복지부, 2013).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인가제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린이집의 설치가 지금까지 계속 인가제로 운영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과거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보육시설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1998년 어린이집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1995~1997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하에 정부가 민간 보육시설을 짓는 사람에게 은행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출해 주며 공급을 장려한 결과, 민간 위주의 어린이집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 바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질 낮은 어린이집 난

“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설치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

립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2005년 1월부터 어린이집 신고제가 다시 인가제로 전환되었다.

어린이집 인가제한의 주요 판단 기준은 어린이집 이용권역⁷⁾ 내 보육공급이 보육수요보다 많은지 여부이다. 보육수요는 매년 1월 1일 기준 보육대상 이용권역 내 '보육대상 아동 수'에 '보육수요율'을 곱한 값을 통해 추정한다. 여기서 '보육수요율'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또는 특정 지역의 여건에 맞게 보육수요율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영아에 적용되는 평균 보육수요율은 지역에 따라 30~45%이며, 유아에 적용되는 평균 보육수요율은 영아보다 높은 40~60% 수준이다(서문희 외, 2012). 한편, 이용권역 내 보육공급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원 및 인가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 정원의 합이다.⁸⁾ 이상에서 설명한 어린이집 보육수요와 보육공급을 비교하여 보육수요 대비 보육공급이 많을 경우, 구체적으로

7) '어린이집 이용권역'이란 '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보건복지부, 2013년).

8) 지역별 보육수요율에는 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포함하지 않고 추계하므로 보육공급 및 어린이집 정원 산출에도 유치원 이용 아동 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3).

“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도
 인가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도
 공급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보육수요가 어린이집별 정원보다 작고, 동시에 어린이집별 현원이 어린이집별 정원보다 작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신규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자체별 인가제한 현황

2011년 9월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77개 구에서는 관할 구역 전체(79개 시군구) 또는 특정 읍면동(98개 시군구)의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전체에서 신규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53개로 전체 시군구의 23%에 불과하다(서문희 외, 2012). 시도별로는 경남, 전남, 경북, 서울, 강원에서 인가를 허용하는 시군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는 모든 시군구에서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⁹⁾ 이처럼 많은 시군구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규 시설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신규 설치된 어린이집의 상당수는 이미 인가권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한 사례이다. 민간 어린이집 신규 설치건수 중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58.6%에서 2010년 69.8%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 신규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 1,933개소 중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건수는 1,355개소로 신규 인가 설치시설 578개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서문희 외, 2012).

한편, 보육공급이 보육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 과다할 때 인가제한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¹⁰⁾ 인가제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보육수급률이나 정원충족률(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이용하는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한 기준선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도 인가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도 공급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감사원, 2012).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 지역에서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성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자치동의 정원충족률이 96%와 92% 이상인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¹¹⁾ 이들 자치구에서 인가제한의 기준이 되는 정원충족률은 100%에 근접하는 수치로 어린이집 현원이 이미 정원을 거의 다 채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데 공급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곧바로 신규 진입을 규제한다면, 향후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도 보육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한편, 서초구와 동작구는 보육수급률과 무관하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서초구와 동작구의 평균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면적 인가제한 조치는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을 막는다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9) 시도별 인가제한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서문희 외(2012) 참조

10) 감사원(2012) 감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낮은 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임의로 낮춤으로써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으로 판정함으로써 인가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11) 서울시 내부자료(2013)

3. 문제점

1) 자유로운 진입 제한으로 어린이집 간 경쟁 부재

보육시설 간 자유로운 경쟁이 존재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품질 제고 노력을 할 유인이 존재하고, 열악한 시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통로가 존재할 때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신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기득권이 보호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독과점적 위치에 놓인 기존 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하여도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보육정원이 현원보다 많은 경우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추가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보육시설 선택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된다. 보육시설의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접근성이다. 집에서 멀리 위치한 어린이집에는 자리가 남을지라도 집 근처 어린이집 정원이 다 차서 아이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파악한 현원 충족률이 100% 이하라 하더라도 해당 부모 입장에서는 보육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접근성 외에 보육시설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들 수 있다. 시설과 교사 자질이 좋다고 소문이 난 곳은 우선적으로 정원이 차고, 같은 동네라도 부모들의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은 입학인원이 모자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지역 내의 보육공급과 수요만을 고려하여 인가제한을 할 경우, 더 나은 품질의 어린이집이 신규 진입하는 통로

“
단순히 지역 내의 보육공급과 수요만을 고려하여 인가제한을 할 경우, 더 나은 품질의 어린이집이 신규 진입하는 통로가 차단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

가 차단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이처럼 지역 내 보육공급과 수요를 비교하여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는 제도는 어린이집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새로운 어린이집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의 기득권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본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18만명(정원의 1.13배)¹²⁾에 달하고 있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민간 어린이집의 공급이 정체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 고액의 권리금 매매

인가제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명의변경을 이용해 기존의 어린이집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이미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운영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취급되어 고액의 권리금과 함께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금은 장소적 이익, 시설투자에 대가, 허가권 등에 대한 대가인데,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미래수익이 높을 것이라 기대될 때 상승한다(윤희숙 외, 2013). 현재 보육료 정부지원금은 표준보육비용과 근접하여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가증이 거래되고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은 인가제한 지역에서 어린이집 인가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취급되어

12) 2012년 6월 기준(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수익을 위해 비싼 권리금에 무리하게 어린이집을 인수한 원장들은 시설 임차료 또는 매입비용에 권리금까지 얹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뒷전에 둘 가능성이 높다. ”

거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윤희숙 외, 2013).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2.7%가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평균 금액은 약 4,766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 최대값은 서울이 약 1억 5천만원, 그 외 도시는 약 3억원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가정 어린이집의 30.7%가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평균 권리금이 약 3,224만원, 민간 어린이집의 35.6%에서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평균 권리금이 약 6,686만원으로 가정 어린이집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또한, 어린이집 정원이 클수록 권리금도 증가하는데, 이는 정부지원금이 보육아동수(영유아 1인당 월 22만원~75만 5천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에도 인터넷 어린이집 매매 사이트에서는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까지 거래되고 있다.

수익을 위해 비싼 권리금에 무리하게 어린이집을 인수한 원장들은 시설 임차료 또는 매입비용에 권리금까지 얹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뒷전에 둘 가능성이 높다.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비의 사적 이용, 특별활동비 과다청구, 질 낮은 급식제공, 무자격 교사 고용 등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위법행위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귀결된다. 또한,

권리금 회수를 위한 매매가 잦아 어린이집의 원장이 자주 변경되어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권리금 매매가 성행하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유치원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학부모와 원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 어린이집 권리금 지출 실태

(단위: %, 만원)

		권리금 지불여부	권리금 평균 금액
전체		32.7	4,766.11
시설유형	민간	35.6	6,686.20
	가정	30.7	3,223.65
규모	20명 이하	30.7	3,223.65
	21~39명	59.3	5,519.56
	40~79명	33.3	8,417.94
	80명 이상	9.7	9,408.60

자료: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보고

[그림 1] 어린이집 매매조건 예시

번호	지역	유형	매매가	정원	비고
2363	서울 성동구	가정어린이집 (임대)	5000/140만	5500만	33명 19명 성동구 대단지 아파트내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세대에... 상세보기
2362	서울 은평구	민간어린이집 (임대)	5000만/250만	7500만	69명 30명 이상 명동구 소재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인가 다 받았습니다... 상세보기
2361	서울 노원구	가정어린이집 (임대)	6000만/385만	3000만	32명 17명 노원구 어룡본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지하실 5룸이내 거... 상세보기
2360	강남 원주시	민간어린이집 (임대)	1억/450만	1억5천	800명 99명 원주시내 민간, 정월98%있고 노원구 어룡본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인가 다 받았습니다... 상세보기
2349	경기 양주시	공립 어린이집 (임대)	2000만/80만	1억 1천	45명 40명 양주시내 공립 어린이집 정월 100% 차임 있음, 차량... 상세보기
2348	경기 용인시	가정어린이집 (임대)	4000만/110만	5500만	48명 20명 기흥구, 살림가는 정월다만 차임인입, 위치 시골쪽... 상세보기
2345	서울 송파구	가정어린이집 (임대)	1억/150만	5000만	35명 20명 송파구 대단지아파트내 가정 어린이집, 정월98%있고 대... 상세보기
2344	경기 안성시	가정어린이집 (임대)	3000만/80만	5500만	34명 20명 정월 100% 일한 어린이집, 차량 운행 없음, 주차장... 상세보기
2343	경기 안성시	가정어린이집 (임대)	2억5천/1억	5500만	34명 20명 정월 100% 일한 어린이집, 평가 인공 완료, 차량 운행... 상세보기
2342	경기 광주시	민간어린이집 (임대)	1억/280만	8000만	97명 60명 후반대 광주 최고지 민간어린이집, 정월 100%차임 받으며 대기... 상세보기
2341	경기 양주시	민간어린이집 (임대)	1억/250만	1억7천	120명 90명대 후반 양주시 최상 위치 민간어린이집, 대지 약 1,000평/연면... 상세보기

자료: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보고

4. 개선방안

1) 인위적인 공급제한 완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만이 생존하고 품질이 열악한 어린이집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가제한제는 품질이 낮은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새로운 어린이집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시설의 퇴출 통로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곳은 과거 어린이집 설치 자격조건이 느슨하던 시절에 설립되어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어린이집들로 보육공급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12년까지만 해도 설립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연연하는 어린이집을 양산한 바 있다. 이처럼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시설들로 보육공급을 충당하고 신규 공급을 제한하기보다는 인위적인 공급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의 진입을 장려하고, 시설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인 어린이집 과잉공급 방지는 품질이 열악한 시설이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달성하여야 할 단순한 공급량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인위적인 공급제한을 완화하지는 것은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모든 시설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하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만이 생존하고 품질이 열악한
 어린이집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

것은 아니다. 부실한 어린이집이 난립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재원의 낭비일 뿐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서 양적 측면에서의 인가 제한을 풀되 신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되는 시설들에 한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질의 시설공급자를 판별하기 위한 일차적인 기준으로 설립자의 재무 건전성을 들 수 있다. 유치원 설립기준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대출 없이 자기 자본비율이 100%가 되어야 하고 임대시설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설립조건에 재무요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작년까지는 근거당설정, 담보대출 등으로 100% 빚을 내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표 3〉).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융자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립한 곳이 전체의 28.1%에 달하고, 최초 융자금 평균은 약 1억 7,665만원에 달한다(〈표 4〉). 융자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립한 곳의 63.1%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며, 평균 최초 융자금액은 민간 어린이집이 약 3억 600만원, 가정 어린이집이 약 1억 9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정 어린이집은 최초 융자금 대비 잔여 융자금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상환해야 할 융자금이 상당 부

“
**인위적인 공급제한 완화를 통한
 시설 간 자유로운 경쟁 유도는
 보육료 상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분 남아 있는 상태이다. 부채부담이 높은 어린이집에
 서는 보육료와 정부지원금을 원리금 상환에 지불하느
 라 시설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로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자격요건 비교

	어린이집	유치원
매매	허용	금지
부채비율	2013년 1월부터 50% 미만 (2012년까지는 부채비율 제한 없었음)	0%
임대시설	허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부터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시 설립자의 부채비율이 자산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시설규정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100%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시설을 제한하는 유치
 원과는 격차가 크다. 또한, 개원 당시만 부채비율을
 맞춰 놓으면 이후 적발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자본비율 50% 미만으로 강화된 어린이집 설치요
 건을 향후 점차적으로 유치원 수준에 근접하도록 설
 치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개
 인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개소수에 제한이 없는
 데¹³⁾, 1인 1개소 운영으로 제한하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이상에
 서 기술한 인위적인 공급제한 완화를 통한 시설 간 자
 유로운 경쟁 유도는 보육료 상한선이 존재하는 상황
 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질의 공급
 자 진입장려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본 원고에서 다루지 못하였지만 궁극적으로 보
 육료 상한선 폐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표 4〉 어린이집 용자금

(단위: 백만원, 개, %)

	최초 용자금(A)	잔여 용자금(B)	최초 용자금 대비 잔여용자금 비율(B/A)	개소수
전 체	176.65	155.81	88.2	1,125(100.0)
국공립	215.49	197.26	91.5	3(0.3)
사회복지법인	111.46	32.90	29.5	21(1.7)
법인, 단체	300.25	159.17	53.0	22(2.0)
민 간	306.62	274.55	89.5	366(32.5)
가 정	109.60	99.79	91.0	710(63.1)
직 장	190.51	12.97	6.8	3(0.3)

주: ()안은 비율임
 자료: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보고, p.69

13) 감사원(2012) 감사결과에 의하면, 1인 2개소 이상 운영사례가 2천여건에 달하고, 1인 최대 23개소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됨.

2) 고액의 권리금 매매 근절

권리금은 개인 간 사적 거래라는 측면에서 현실적 규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상품화해 교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매매 과정에서 고액의 권리금이 오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의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심각성을 갖는다. 따라서 어린이집 매매과정에서의 권리금 수수는 공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조치는 어린이집 매매 시 인가증을 반환하고 신규 인증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사람은 인가증을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함으로써 인가증이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것이 너무 과격한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매매 시 기존 시설의 평가인증을 취소하고 새로이 평가인증을 받게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어린이집 대표가 자주 바뀐 어린이집은 부실운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IV. 맺음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한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만 해도 취약계층 중심 지원이던 보육서비스가 대표적인 보편적 성격의 복지서비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를

“
**작년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은 2012년 만 0~2세와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작년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는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가 적절한 품질을 갖추었는지 관리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시설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향후 보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본 원고에서는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하에서 최소한의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두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자발적 참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시설의 참여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열악한 시설의 참여가 낮아지는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

“
**양적 측면에서의 인가제한을 풀되
 신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되는
 시설들에 한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이 높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3년 9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불완전한 정보공개 방식으로 인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에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원고는 점차적으로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현재 평가인증 참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설의 자체적인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의 품질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과정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행 방식보다 더욱 세부적인 평가인증 결과 내역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행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는 품질이 낮은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새로운 어린이집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시설의 퇴출 통로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크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가제한으로 인해 이미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 운영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 취급되어

고액의 권리금과 함께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인 어린이집 과잉공급 방지는 품질이 열악한 시설이 정원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하여야지 단순히 공급량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보고는 양적 측면에서의 인가제한을 풀되 신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능력이 되는 시설들에 한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보육료 상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공급자 진입장려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의 활성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보육료 안정화에 대한 압력이 높은 현 상황에서 보육료 상한선 폐지는 보육료 과다인상에 대한 우려로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어 논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본 원고의 한계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본 원고에서 다루지 못하였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자질과 직결되므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참고문헌〉

감사원,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2012.
 김영미, 「보육서비스 행위자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사회 연구』, 33(1), 2013, pp. 78~12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2012년 전국 보육실

- 태조사], 2012.
-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3.
- 보건복지부, 「2013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2013.
- 서문희 외, 『어린이집 설치·인가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2.
- 윤희숙·김인경, 「보육·육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KDI 포커스』, 통권
제34호, 2013.
- 이미화 외,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2.
- 한국보육진흥원 www.kcpi.or.kr



공공정책포럼

■ 제33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제33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 일 시 2013년 12월 27일(금), 12:00~13:40
- 장 소 서울 팰레스호텔 로얄볼룸(1F)
- 진행순서
 - 12:00~12:40 조찬
 - 12:40~12:4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 12:45~13:00 주제 발표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13:00~13:40 자유토론
 - 13:40 폐회

* 본 원고는 2013년 12월 27일 서울 팰레스호텔 로얄볼룸(1F)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33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철도파업 등으로 인해 최근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33회 포럼에서는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부서에 계시는 최광해 공공정책국장님께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발표를 하실 것이다. 오늘 발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인 만큼 의미가 클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발표 요약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최광해/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지난 12월 11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상화 대책은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기관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12월 24일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워크숍’의 발제와 같은 내용이다.

1. 정상화 대책 추진배경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 배경으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공공기관의 비리, 방만경영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기관장 연봉의 과다인상이나 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 공공기관의 과도한 임직원 혜택 등으로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이

에 VIP의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근절 요구에 이어 지난 12월 11일 경제부총리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가 있었다.

공공기관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여 국가채무를 추월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493.3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207.5%, GDP 대비로는 38.8%에 이른다. 현황을 들여다보면 코레일의 경우 이자보상 배율이 손실, 석유공사의 경우 0.8,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0.8, 그리고 LH의 경우 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등급의 경우에도 LH는 현재 A1이지만 정부보증인 B2로 투자부적격 등급이다. 이 외에도 KEPCO, KORES도 비슷한 상황으로 민간기업이었더라면 사실상 경영을 중단했을 상황이다.

이러한 부채 과다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많은 SOC나 에너지 담당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고액 성과급 지급, 금융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상대적 과다함, 비상임이사에 필요 이상의 수당 지급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방만경영 사례들은 국민 불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불합리한 복리후생 역시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2.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

정상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기능/사업측면에서 기능 점검과 조정, 재무측면에서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와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강도 높은 자구 노력, 그리고 조직/인사측면에서 방만경영 해소이다. 관리·감독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경영실적평가의 개선과 활용, 장관과 기관장의 자율과 책임, 정상화 협의회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 확대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11일자로 Alio를 통해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 실태에 대해 소상히 공개하였다. 또한 부채증가의 원인이나

성질 등에 대한 분석정보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부채관리 강화의 원칙은, 첫째, 공공기관은 지구 노력 등 부채감축 노력 계획, 둘째, 정책당국은 지구 노력을 전제로 한 정책패키지 마련, 셋째,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41개 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인데, 이들 기관의 현재 부채비율이 220%이다. 2017년에는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부채관리와 관련해서는 12개 부채 과다 기관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에 대해 중점관리를 하려 한다. 먼저 정부는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12월 30일에 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2014년 1월까지 12개 기관이 지구 노력 등을 포함한 부채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과 관계부처, 기재부가 참여하는 점검팀에서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하고, 공운위에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부채감축계획을 확정하도록 한다. 이후에는 지구 노력 이행점검을 위해 2014년 3분기 말 자기 노력 이행실적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또 부채감축 계획 이행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방침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 미진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분회계 도입 등을 통해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구분회계 도입을 통해 채권발행을 견제하고 자산매각 활성화, 예비타당성(재무적) 조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하려 한다.

방만경영 개선에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만경영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화계획을 정상화협의회에 2014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2014년 3분기 말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에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하려 한다.

그리고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가이

드라인 제시 → 공공기관에서 기관별 정상화계획 제출 → 주무부처의 정상화계획 추진상황 점검 → 정상화협의회의 추진상황 종합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경영평가에서도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관련 평가비중 상향조정, 그리고 강소형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이 외에도 비리조사 강화, 방만경영 개선 우수사례 발굴, 관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기타공공기관 대상으로 주무부처 책임하에 평가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에 대해 상시적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조직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려 한다. 기관장 및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수를 하향 조정하여 기관장 성과급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은 기관장의 80%,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정액 또는 연 3천만원을 상한으로, 총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의 지구 노력 미흡시 임금인상 동결 등을 실시하려 한다.

정상화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범정부적 점검체계를 구축' 한다는 데에 있다. 공공기관은 자율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주무부처 및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컨트롤타워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산하에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행상황 점검 및 부채감축계획과 정상화계획 확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민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매년 10월 10일은 '공공기관 정상화 DAY'로 정하여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실적을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것이다.

3. 공공기관장의 역할과 책임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경영성과협약제 평가를 통해 부채 및 방만경영과

관련된 기관장의 평가비중이 강화될 것이다. 공통과제인 리더십 및 책임경영과 더불어 성과과제의 범주로 중장기전략과제, 방만경영관리, 부채감축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중간평가를 통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려 한다. 평가대상은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 18개 기관, 방만경영 대상기관 12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 이면합의 등 불성실 또는 허위공시 등을 상반기 중 집중 점검 적발시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것이다.

또한 부채·방만경영과 관련된 경영실적 평가비중을 강화할 것이다. 종전 부채관리 지표 12개, 방만경영 관리 지표 8개에서 부채관리 17개, 방만경영 관리 12개 지표로 경영실적 평가에서 그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부문이 우수해도 부채·방만경영 관리가 미흡하다면 결과적으로 종합등급이 하락하여 해당 기관의 성과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상화 대책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서 기관장 면책 등을 보장하려 한다. 부채감축계획과 관련해서는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 경영평가나 감사상 불이익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것이며, 방만경영 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업 등에 대해서도 면책할 것이다. 또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도 이면합의 등을 명확히 공시할 경우 그 간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면책하려 한다. 이처럼 기관장들이 소신껏 방만경영 개선이나 부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 질의응답

박영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 궁금하다.

최광해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가 책임을 지고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부처의 평가결과를 해당 부처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지침은 2014년 1월 중 전달될 것이며, 내용은 강소형기관 평가지침에 준용하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정인익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상화 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기관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 중요한데 이는 한편으로는 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패키지는 기관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너무 관리자 입장에 서기보다는 기관과의 동행을 부탁드린다.

최광해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정책패키지는 공공기관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하기 보다는 잘 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 중이다. 칼자루를 쥐 사람은 국민이고 정부나 공공기관은 칼끝에 있는 상황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다. 이번 정상화 대책이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

마무리 말씀

송대희/좌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제33회 공공정책 포럼을 마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 그리고 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상화대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들의 공공기관 개혁 요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번 정상화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재탄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IP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 동향

동향 13-12

요약

- 미국의 상원 재무위원회(The Senate Finance Committee)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staff discussion draft)을 발표함
 - 현행 42개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제도는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원 대상 항목을 간소화하고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인 클린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생산 촉진 및 환경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네덜란드는 2013년 12월 23일 「2014년 개정세법」을 공포함
 - 법인세 개정 내용은 청년의 신규채용에 대한 비용공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율 인상과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공제 축소 등임
 - 소득세 개정 내용은 소득세 최저세율의 인하, 근로세액공제 폐지,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인하임
- 이탈리아는 2013년 과세연도에 한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수입에 대해 8.5%의 세율로 추가 과세함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13년 12월 2일 경제성장을 위한 세계개편안을 발표함
 - 조세수입 증대, 국제적 역할 증대, 법인세 개정, 펀드 육성 등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임
- 스페인 정부는 2013년 12월 3일 '룩셈부르크의 특수투자펀드(SIF)에 대하여 CFC규정의 미적용을 명시'한 규정집을 발표함
 - 룩셈부르크에서 부과하는 연간 0.01%의 순자산세에 대한 해석에 따른 조치임
- 제9차 WTO 각료회의가 2013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 무역원활화, 최빈개도국의 3개 부문 협상이 타결되어 10개 합의문이 채택됨

1.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 논의

가. 개요

- 2013년 12월 18일 상원 재무위원회(The Senate Finance Committee)에서는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staff discussion draft)을 발표함
 - 재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의 공동 발의임
- 현행 42개의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제도는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재정적인 부담도 적지 않



다는 문제점이 있음

- 현재 10여 개의 화석연료(fossil fuels) 관련 세제지원, 10개의 재생연료(renewable fuels) 관련 세제지원, 6개의 클린전기(clean electricity) 관련 세제지원 등이 있음
 - 42개 제도 중 25개는 한시적 규정으로서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폐지와 연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클린전기에 대한 규정은 1978년 이후 14차례 개정됨
 -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의 조세지출이 예상됨
- 이번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개편안에서는 지원 대상 항목을 간소화하고 클린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 생산 촉진 및 환경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세제지원 대상 항목을 크게 클린전기(clean electricity) 부문과 클린운송연료(clean transportation fuel)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기술-중립적 세제지원이라 함은, 클린에너지의 원천(화석연료 또는 재생연료)이나 생성 방법 등에 관계 없이 청결도(cleanliness)의 크기, 즉 성과 기준(performance-based)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임
 - 청결도(cleanliness)는 환경보호협회(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에서 정한 일상 배출 기준(lifecycle emissions basis)에 근거하여 측정됨
 - 현행 규정하에서는, 동일한 클린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기술적 차이에 의해 세제 혜택의 차등이 나타나기도 함
 - 이러한 새로운 세제지원제도를 일정목표 달성 시까

지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보다 큰 확실성을 부여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제도 중 국내의 전기나 운송연료 생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음과 같은 항목은 폐지하고자 함
 - 거주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25C credit for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차량연료 전지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30B credits for fuel cell motor vehicles), 전기 충전식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30D credits for electric plug-in vehicles), 에너지 효율적 신 주택 건축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45L credit for construction of energy-efficient new homes) 등

-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음

나. 세부 개편내용

- 기본적으로 클린전기 부문과 클린운송연료 부문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세제지원을 할 것이며, 생성된 클린에너지의 청결도(cleanliness)에 따라 세제 혜택의 정도를 결정함
 -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클린전기란, 모든 종류의 전기 생산 시의 평균적인 오염수준치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25% 이상 개선시키는 전기를 말함
 -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클린운송연료란, 전형적 형태의 휘발유(conventional gasoline) 오염수준치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25% 이상 개선시키는 운송연료를 말함

- 사업자는 클린에너지에 대해 제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제조세액공제는 해당 클린에너지가 제조되는 매해마다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제조기기(facility)가 설치되어 가동되는 시점에 적용받을 수 있음
-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클린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전제로 하며, 클린운송연료는 미국 내 생산 및 판매가 전제되어야 함
- 미국의 대기 환경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세제지원을 중단할 예정임
 - 클린전기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 내 전기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가 2013년 기준치보다 25% 이상 낮아지는 시점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클린운송연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국 내 모든 운송연료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농도가 전형적 형태의 휘발유 기준치보다 25% 이상 낮아지는 시점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개편안의 초안에서는 현행 규정 중 일부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 클린전기부문: 재생전기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45 credit for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전기 관련 투자세액공제(Section 48 investment tax credit for electricity), 거주지 재생전기 투자세액공제(Section 25D credit for residential renewable electricity investments)
 - 클린운송연료 부문: 운송등급, 재생 및 대체연료에

대한 세액공제(Section 40, 40A, and 6426 credits for transportation-grade, renewable, and alternative fuel)

-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적용의 폐지를 제안함
 -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기기
 - 셀룰로오스연료 정제공장(cellulosic biofuel refineries) 및 특정 적격연료 정제에 필요한 시설

(자료 수집 및 정리: 이형민 회계사)

2. 네덜란드 2014년 개정세법 공포

- 2013년 12월 23일 공포한 2014년 개정세법에 포함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함
 - 세법 개정안은 9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후 세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13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함
 - 개정세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

가. 법인세

-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청년(young employees)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3,500유로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여기서 청년은 계약체결 시점에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로 신규고용 전 실업급여를 받은 자임
 - 고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주일에 적어도 32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적용함
 - 공제는 2년 동안 적용되며, 채용 시점에 나이가 27세 이하였으나 공제를 적용받는 2년 중에 26세를 초



과하더라도 공제 가능함

- 에너지 투자공제(Energy Investment Allowance; EIA)가 적용되는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2,300유로에서 2,500유로로 200유로 인상하여 공제 대상을 축소함
 - 에너지 투자공제는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투자하고 투자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련 투자액의 4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임
 - 공제 대상의 영역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매년 에너지리스트(the energy list)를 통해 공제 가능한 투자사례를 공시함¹⁾
 - 다섯 가지 영역은 기업의 빌딩, 공정(process), 운송수단(transport resources),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 에너지 관련 자문비용(energy advice)임
 - 현행 세법상 자산의 투자액이 건별로 450유로 이상, 연간 2,300유로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deduction)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행 54%에서 60%로 인상함
 - 공제 대상 비용은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지출로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특별부

서(the Agency NL)에서 인정한 R&D 비용을 대상으로 함

- 다음의 다섯 가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위탁 연구비
 - 임금
 - 금융비용(financing costs)
 - 비유동자산(immovable property)의 매입비용
 - 납세자의 사업용자산 처분과 관련된 비용
- 직전연도 중 직원에게 15만유로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초과 지급액의 16%를 특별세로 부과하는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함
 - 2013년에 일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였으나 2014년까지 해당 규정을 연장한 것임

나. 소득세

- 2014년에 한해 소득세 최저세율을 0.75%p 인하함
 - 현행 최저세율²⁾은 37%(사회보장세를 포함한 세율임)이며 2014년 적용될 최저세율은 36.25%임
- 대주주(substantial shareholding)가 보유주식을 통해 얻은 소득 중 25만유로 이하인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함
 - 대주주란 직 · 간접적으로 기업 출자금이나 특정 주

1) NL Agency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http://english.agentschapnl.nl>

2) 네덜란드의 현행 65세 미만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과세구간(유로)	소득세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19,645 이하	5.85	37
19,645~33,363	10.85	42
33,363~55,991	38	42
55,0011 초과	41	52

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임

- 현행 세법상 대주주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함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세액공제(working bonus credit)를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함
- 근로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63세 이하인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 1,100유로까지의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단, 납세자의 소득이 최저임금(1,469.4유로)의 175% 이상이면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 부가가치세 등

- 주거용 건물의 수리나 재건축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율(6%) 적용기한을 당초 2014년 3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연장함
- 기업에 부과되는 수도세를 세제곱미터당 0.165유로에서 0.33유로로 인상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3. 이탈리아의 금융회사 수익에 대한 추가과세

- 2013년 11월 30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과세연도에 한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수입에 대해 8.5%의 세율로 추가 과세함
- 현행 법인세율은 27.5%이며, 2013년 금융회사는 36%(27.5%+8.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임
- 다만, 손금불산입 대상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추가 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4. 룩셈부르크 정부 경제성장을 위한 세계개편안을 발표

- 룩셈부르크의 신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 유치를 위한 세계개편안을 12월 2일에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과 룩셈부르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조세수입 증대 방안 중 부가가치세 인상은 EU의 최저 세율을 유지하는 수준까지만 인상하고 다른 세금은 인상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함
-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제적으로 경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
 -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한 방안
 - 펀드 허브 국가로서 위상 강화 방안
- 또한 이전가격거래 규정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는 세율 인상을 최소화 하고, 기존 세법 운영을 강화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 경제성장에 의한 조세수입 증대, 조세징수 과정의 강화를 통한 조세수입 증대, 세법 현대화를 통한 세입 증대, 조세법에 관련된 법률 정비를 통한 세입 증대 등이 그 방안임
 - 직접 또는 간접 자진납세시스템을 개인과 법인에게 강화하여 적용할 것임
 - 지연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진일보된 체계적 벌칙을 적용할 것임



- 조세포탈에 대하여 정부가 단속을 강화할 것임

- 신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세입 증대에 고려하고 있으며 인상 수준은 EU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임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한 예상되는 세원의 감소를 보전하는 수준까지 인상될 것임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현행 15%이며 17% 정도로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나. 국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

- 신정부는 국제적인 역할 증대를 위하여 외국 인재 유치와 이전가격의 국제기준 준수에 관한 방안을 제시함
 - 다국적 기업의 외국 인재들이 룩셈부르크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것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정부 서비스의 제공 확대를 제안(체류기간의 유연화 등)함
 - 투자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르는 이전가격 정책을 준수하여 나갈 것임
 -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룩셈부르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임
- 또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및 조세정보 교환 같은 국제적인 조세규정 준수에 관한 방향을 발표함
 - 개편안은 금융거래세(FTT)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
 - 단, 개편안은 금융거래세가 유럽에서만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음

- 신정부도 EU와 OECD에서 구성하고 있는 국제적 조세정보 교환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며 자동정보 교환을 차후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개정안

- 다국적 기업의 본사 유치를 위하여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의 현대화, 지적재산권의 수입에 대한 과세체계 수정,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ies) 사용에 대한 규정의 정형화를 제안함
 -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는 해당 보유지분을 통해 얻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임³⁾
 - 기능통화 사용에 대한 규정의 정형화는 세무신고 시 외국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유로화로 변환해서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가 가능하게 해 주는 것임⁴⁾
- 또한 기업들의 룩셈부르크로의 자본도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상이자율제도(notional interest deduction)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가상이자율제도는 투자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로서, 다국적 기업이 자기자본금으로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가상이자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서 특별적립을 통한 이익

3) 국제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

4) www.pwc.lu/tax

에 대한 과세이연(deferred profits taxation)을 허용하도록 제안함

라. 펀드에 대한 기존 규정 유지

- 정부는 룩셈부르크를 대체투자펀드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펀드에 부과하는 세금은 인상하지 않고 펀드 관련 규정도 크게 개편하지 않는다는 방침
- 사모펀드, 부동산펀드, 헷지펀드를 포함하는 특수투자펀드(Specialized Investment Funds; SIFs)의 펀드공모세(subscription taxes)를 인상하지 않기로 함
- SiCARs펀드(sociétés d'investissement en capital à risque; SiCARs)에 대한 제도 및 세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5. 스페인 정부 룩셈부르크의 특수목적펀드(SIF)에 CFC규정 배제를 명시

- 스페인 세무당국은 12월 3일에 발표한 규정집(binding ruling)에서 룩셈부르크의 펀드 형태 중 하나인 SIF(Luxembourg Specialized Investment Fund)는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 스페인에서는 자본을 유지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의 SIF를 이용할 경우 당해 SIF에 대한 CFC규정 적용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음⁵⁾

■ 스페인의 CFC규정은 인위적인 회사를 이용한 조세남용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적용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스페인의 CFC규정은 거래관계에 인위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저세율 또는 비과세 관할에서 생기는 수동적 투자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스페인에 거주하는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수입을 직접 획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임⁶⁾
- CFC규정을 적용하여 스페인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한 세금은 스페인 「법인세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한함
 - 스페인 「법인세법」 제107조는 비거주자에 의해 얻어진 소득 중 과세가 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에 관한 조항임⁷⁾

- 이번 스페인 정부가 명시한 SIF에 대해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은 룩셈부르크의 SIF가 스페인에 위치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취득한 펀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함
 - 스페인에 위치한 기업은 자금을 룩셈부르크의 SIF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야 함
 - 스페인 기업에 자금을 모집하여 송금한 SIF는 룩셈부르크 내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이사회도 개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 그동안 룩셈부르크의 SIF에 부과되는 연간 0.01%의 순자산세가 스페인 「법인세법」 제107조에 의한 법인세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SIF에 대한 CFC규정 적용의 관건이었음

5) "Spanish Tax Alert," November 2013

6) 수동적 투자의 수입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입을 의미하며 이자수입이 대표적인 수동적 투자 수입임

7) 스페인 법인세법 107조



- 스페인 세무당국은 이번 발표를 통하여 SIF에 대해 룩셈부르크에서 부과되고 있는 연간 0.01%의 순자산세는 스페인의 법인세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재산세의 일종으로 규정함
 -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당해 SIF에 부과되었던 순자산세는 국외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법인세법」 제 107조에 의한 법인세이어야 한다는 스페인의 CFC 규정 적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
-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룩셈부르크의 SIF는 CFC규정 적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즉, 룩셈부르크의 SIF는 조세회피를 위한 실체가 아니라, 단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펀드로 여김을 확인한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6. 제9차 WTO 각료회의

- 2013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9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 무역원활화, 최빈개도국의 3개 부문 협상이 타결되어 10개 합의문이 채택됨
 - 특히 이번 합의는 1995년 WTO 출범 후 처음으로

범세계적 협정이 타결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기존의 '일괄타결 방식'에서 '조기수확 방식'⁸⁾으로 협상 방식을 바꾼 후 이루어낸 성과임

- 이번 협정은 2015년 7월 31일까지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회원국에 한하여 발효됨

가. 농업 분야 합의사항⁹⁾

- 농업 분야는 TRQ(Tariff Rate Quotas)¹⁰⁾ 관리 개선,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식량비축, 수출경쟁 그밖에 면화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
- 발리패키지(Bali Package)에 따르면 3년 연속 TRQ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혹은 비조건적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¹¹⁾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시 TRQ 물량만 정하여 수입국 재량에 따라 시행한 결과 국별 TRQ 이행률이 큰 차이를 보이자, 2012년 9월 G20¹²⁾이 관리방식 개선을 제안하였음
 -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 기준 총 63개 품목에 대해 TRQ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소진율이 65% 미만인 품목 중 선착순 혹은 비조건적 허가방식 이외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대추, 인삼, 잣의 세 개 품목임¹³⁾

8)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전진시키는 방식

9) WTO, <https://mc9.wto.org/draft-bali-ministerial-declaration>

10)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림

11) WT/MIN(13)/39-WT/L/914

12)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에 속한 7개국과 유럽연합 의장국에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 등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이며, 수출개도국인 브라질이 대표하여 만든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옴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2013. 10.

-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리변경에 따른 의무에서 면제됨¹⁴⁾

- TRQ의 협상, 이행계획 관련 정보 및 신청 등에 대한 공표는 90일 전에 해야 하며 신청은 30~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타회원국은 개도국이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보조한도(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¹⁵⁾를 초과하였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구적인 해결 방법(Permanent Solution)이 마련될 때까지 분쟁을 자제해야 함¹⁶⁾
- 위의 결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재 개도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비축 프로그램이 보조한도를 초과해야 함
- 또한 최근 5년간의 국내 보조 통보(Domestic Support Notification) 내용을 비롯하여, 공공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최근 3년간의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단, 비축물량의 방출과 같은 무역 왜곡이 발생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식량 안보에 피해를 입을 경우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금지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제소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쌀에 대한 정부의 추곡수매제¹⁷⁾를 폐지하고, WTO의 허용보조인 공공비축제¹⁸⁾를 도입해 보조한도 초과문제 제기 소지 가능성은 적음

-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2005년 「홍콩각료선언」¹⁹⁾의 수출보조와 같은 무역왜곡 철폐 및 수출신용 축소, 수출국영무역 규율 강화 등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최우선 과제로 집중 논의하기로 함²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위원회에서는 매년마다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식량지원 및 수출국영무역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음
- 면화 부문에서는 2005년 「홍콩각료선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개발도상국의 면화분야 강화 협의의 메커니즘 추진 및 농업위원회 연 2회 논의 등을 결정함²¹⁾
- 이번 결정에서는 C-4국가들²²⁾의 「홍콩각료선언」이행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²³⁾ 미국은 DFGF 요구²⁴⁾ 등을 거부하였음
- 농업위원회에서는 면화 무역과 관련하여 시장 접근

1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5) 시장가격지지, 감축대상 직접보조, 기타 감축대상지원 등 모든 보조금액을 합한 것으로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왜곡 보조금의 총계

16) WT/MIN(13)/38-WT/L/913

17) 정부가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매입하는 제도

18) 정부가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

19) 2005년 12월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지원,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설정, 무역왜곡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규범 마련 등이 포함된 각료선언

20) WT/MIN(13)/40-WT/L/915

21) WT/MIN(13)/41-WT/L/916

22) 베넌, 부르키나파코, 말리, 차드 등 면화를 수출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4개 개발도상국들('Cotton Four')

23) WT/MIN(13)/41-WT/L/916

24) 베넌, 부르키나파코, 말리, 차드 등 면화를 수출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4개 개발도상국들('Cotton Four')

2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4) Duty-free and quota-free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관세 및 쿼터를 면제해주는 것



성, 국내보조 및 수출 경쟁의 세 분야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 또한 면화 관련 인프라지원 프로그램, 면화특정(Cotton-Specific) 지원 및 기타 면화 관련 지원에 대한 추적 및 검토를 골자로 하는 사무총장 주관의 면화 메커니즘을 추진하기로 함

나. 무역원활화

- 무역원활화의 일반적인 정의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및 조화, 현대화를 의미함²⁵⁾
 -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 진영은 무역원활화 조기 수확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음
-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의무 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 협정문으로 구성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전개되어 옴²⁶⁾
 - Section I에서 선진국은 신속한 통관을 위한 의무화 규정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Section II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의무 조항을 주장하였음
 - Section II에서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의무조항으로 A, B, C 의무로 기간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 협정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개도국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가 있음
- 무역원활화 부문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 무역규정 공포,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 작성되고 의무화 된 것은 아래와 같음²⁷⁾
 - 각 국가들은 수출입과 수송(공항, 항구 등) 절차에 관해 관련 법령 등 통상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함
 -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물품 도착 전(Pre-arrival Processing)에 관련 서류와 필요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여야 함
 -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행정 결정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게 함
 - 수출입 과정에 「관세법」, 관세규정 또는 과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위반하였을 경우 사건의 상황과 위반 및 경중에 비례하여 법에 따라 패널티를 잘못된 이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함
 - 신속 통관을 위한 통관 후 심사(Post-clearance Audit)를 도입해야 하며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함
-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가 되면 비관세장벽인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역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 최빈개도국

-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ies; LDC)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조건을 완화하고 원산지 제품을 우대하기로 합의함²⁸⁾

25) 「WTO 발리 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IEP, 2013.12.24

26) WT/MIN(13)/36-WT/L/911

27) WT/MIN(13)/36-WT/L/911

2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무관세-무쿼터 정책²⁹⁾, 최빈개도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우대를 위한 의무면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협의함³⁰⁾
 -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게 97% 이상의 무관세-무쿼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함
 - 최빈개도국과 서비스분야 협상결과 이행 시 일정 부분 예외를 허용해 주는 것을 협의함
- WTO협정 및 각료·일반이사회 결정 등에 포함된 우대규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치·운영하기로 함³¹⁾
- 최빈개도국에 관련된 이슈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지원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합의됨

라. 기타

- 비농산물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협상 및 비관세장벽 협상 분야에서 교착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³²⁾
- 무관세 정보기술(IT) 품목을 확대하기 정보기술협정(ITA)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됨
- 예멘이 160번째 WTO 회원국으로 가입함³³⁾

〈자료 수집 및 정리: 노영예·양지영 연구원〉

29) WT/MIN(13)/44-WT/L/919

30) WT/MIN(13)/43-WT/L/918

31) WT/MIN(13)/45-WT/L/920

32) 외교부, 2013 WTO/DDA 협상 전반 동향

3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라트비아, 유로존 18번째 회원국 합류¹⁾(2013.12.31.)
 - 2014년 1월 1일부터 라트비아가 유로존에 합류하며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국가는 총 18개국으로 확대
 - 라트화와 유로화의 공식 전환율은 1유로=0.702804라트화임
 - 6월 30일까지 라트화와 유로화가 모두 공시되어야 하며, 무제한 화폐 교환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상업은행에선 6월 30일까지, 우체국에선 3월 31일까지 제공
- EU 구조투자펀드(EU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기본원칙 시행²⁾(2014.1.7.)
 - EU 구조투자펀드는 유럽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유럽통합기금(cohesion fund), 유럽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유럽해양수산펀드(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등으로 구성
 - 이 펀드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계획·시행·감

시·평가에 보편적 기준이 적용됨

- 유로회원국이 준수해야할 파트너십 원칙에 관한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음
 - (투명성) 파트너 선정 과정에 투명성 확보
 - (정보제공) 파트너에게 적절한 정보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함
 - (참여) 감시와 평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에 해당국들이 참여해야 함
 - (능력향상) 파트너 국가의 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 (플랫폼 구축) 상호적 학습활동, 신례 공유, 혁신적 접근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IMF

- IMF 이사회,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하의 ‘금융 안정성 평가*’ 방식 개선(2014.1.13.)³⁾
 - * IMF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국가들을 의 무적인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FSAP⁴⁾에 따라 5년마다 금융 안정성에 대한 평가 시행
 - 한국은 2010년 평가에서 25개국 중 19위를 차지
- (방법 개선) 첫 번째 평가(2010년 9월) 시행 경험과 금융위기 및 국가부채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대상 국가 결정·평가 방법 개선
 - 상호연계성 강조, 위험 노출 금액(covered exposure)의 범위 확대, 금융부문 간 가격변동 파

1) EU 집행위원회 "Latvia becomes the 18th Member State to adopt the euro"

2) EU 집행위원회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Commission boosts partners' role in planning and spending"

3) 자료 : IMF 보도자료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4/pr1408.htm>

로이터 <http://in.reuters.com/article/2014/01/13/imf-financial-idINL2NOKK2GH20140113>

4) FSAP은 IMF/WB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임

- 급 가능성 고려 등
- (대상 확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가 평가 대상에 추가되어 평가 대상 국가는 기존의 25개국에서 29개국으로 확대
 - (관리체계 개선) 2012년 도입된 통합감시체계(ISD; Integrated Surveillance Decision)를 반영해 금융안정성 평가를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업데이트함
 - IMF는 새로운 방법론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리스크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위험, 국가와 은행 간의 연계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 (공공채무비용) 공공채무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200만캐나다달러(0.2%) 감소

〈표 1〉 캐나다 2013년 10월 Fiscal Monitor 주요 결과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FY2012-13 ¹⁾	FY2013-14 ¹⁾
수입 (Revenues)		140,817	144,926
지출 (Expenses)	프로그램지출 (Program expenses)	-135,447	-140,886
	공공채무비용 (Public debt charges)	-17,315	-17,273
재정수지 (Budgetary balance)		-11,945	-13,233

주: 1) 4~10월 누계액 기준
자료: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October 2013"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캐나다 재무부, FY2013-14 Fiscal Monitor 발표 (2013.12.23.)
 - FY2013-14 재정적자(4~10월 잠정 누계액)는 전년 동기 대비 13억캐나다달러 증가한 132억캐나다달러
 - (수입) 개인소득세, 재화 및 용역세, 고용보험(EI) 프리미엄 인상, 기타 수입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약 41억캐나다달러(2.9%) 증가
 - (프로그램 지출) 전년 동기 대비 약 54억캐나다달러(4.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요 정부부문 및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 지출 증가에 기인

5) 자료: 프랑스 재무부,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ressources-documentaires/toutes-les-actualites/les-grandes-lignes-de-la-loi-de-finances-2014.html>,

<http://www.economie.gouv.fr/chronique-budgetaire-projet-loi-financement-securite-sociale-pour-2014>

6) 정부 2014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3 『재정동향』 제10월 1호 및 제11월 2호 참고

7) 사회보장부문 예산안은 2013 『재정동향』 제10월 1호 참고

 프랑스

1. 예산·결산 등

- 「2014 예산법(Loi de Finances: LF)」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LFSS)」 승인 및 공표(2014.1.6.)⁵⁾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⁶⁾은 12월 19일 의회 및 12월 29일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의 승인을 거쳐 12월 30일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표
 - 사회보장부문 예산안⁷⁾은 12월 3일 의회 및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거쳐 12월 24일 관보에 공표



2. 기타

- 헌법재판소, 부유세 수정안 합헌 결정(2013.12.29.)⁸⁾
 - 직원들에게 연간 100만유로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프랑스 기업들은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에서 소득세 50% 등 총 7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
 - 2012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연간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 증세에 대해 위헌 결정⁹⁾을 내렸으며, 이후 정부는 과세대상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전환한 부유세 수정안을 추진
 - 다만,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제한
- 통계청(INSEE), 2013년 3분기 일반정부 부채 발표(2013.12.24.)¹⁰⁾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13년 3분기 말 일반정부 부채는 1조 9,008억유로로 2분기 대비 114억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2013년 2분기 93.5%에서 92.7%로 낮아짐

〈표 2〉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일반정부 부채

(단위: 십억유로)

	2012 Q3	2012 Q4	2013 Q1	2013 Q2	2013 Q3
일반정부 부채	1,818.0	1,833.8	1,870.3	1,912.2	1,900.8
GDP 대비 %	89.7	90.2	91.8	93.5	92.7

자료: 프랑스 통계청, 2013.12.24.

- 통계청(INSEE), 2013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3.12.24.)¹¹⁾
 - 프랑스는 가계 및 정부 소비지출 둔화 및 수출 감소, 기업투자 하락 등에 따라 2013년 3분기 마이너스 성장률(-0.1%)을 기록
 - 2013년 2분기 경제성장률 0.6%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
 - 프랑스 정부는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2014년 0.9%, 2015년 이후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 3〉 경제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2 Q4	2013 Q1	2013 Q2	2013 Q3	2012 연간	2013 연간(전망)
GDP 성장률	-0.2	-0.1	0.6	-0.1	0.0	0.1

주: 계절조정 데이터
자료: 프랑스 통계청, 2013.12.24.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8) 자료: 프랑스 헌법재판소,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les-decisions/acces-par-date/decisions-depuis-1959/2013/2013-684-dc/decision-n-2013-684-dc-du-29-decembre-2013,139011.html>

9) 자세한 내용은 2013 『재정동향』 제1월 1호 참고

10) 자료: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40&date=20131224>

11) 자료: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28&date=20131224>

독일

1. 기타

- 연방 통계청, 2013년 1-3분기 재정적자 발표 (2013.12.27.)¹²⁾
 - 2013년 1~9월의 재정수지 적자가 287억유로로 집계, 2012년 같은 시기 대비 51억유로가 증가
 - 국가전체 재정수입은 8,677억유로로 전년도 대비 2.5% 증가했으며, 재정지출은 8,964억유로로 3%가 증가
 -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232억유로로 2012년 대비 10억유로의 적자 감축, 주정부 역시 38억유로의 적자를 줄여 균형재정을 달성
 - 사회보험 재정 상황은 악화되어 59억유로 흑자에서 40억유로 적자로 전환
 - 연금보험(-26억유로), 건강보험(-11억유로), 고용보험(-7억유로)의 재정적자 기록
 - 개호보험(간병 및 요양보험) 재정은 반대로 2억유로의 흑자 달성

〈표 4〉 1-3분기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전체	연방 정부	주 정부	기초 자치단체	사회보험
재정지출	2013	896.4	263.0	241.6	146.8	398.6
	2012	869.9	263.1	236.2	140.4	386.7
재정수입	2013	867.7	239.7	241.5	145.4	394.7
	2012	846.5	238.7	232.6	139.1	392.6
재정수지	2013	-28.7	-23.2	0.0	-1.4	-4.0
	2012	-23.6	-24.3	-3.8	-1.4	5.9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2013.12.27)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일본

1. 기타

- ‘2014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 각의 승인(2013.12.21.)¹³⁾
 - (경제동향) 종합적인 정책효과와 가계 및 기업의 의식 개선, 내수 중심 소비 등에 따른 경기회복 움직임에 따라 2013년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2.6%, 명목성장률은 2.5%로 추정
 - (경제전망) 2014년도 일본 경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반동 감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경제대책 추진 등에 의해 전년에 이은 견조한 내수를 기반으로 경기회복을 전망하며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
 -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1.4%, 명목성장률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 물가 및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증가하

12) 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lungen/2013/12/PD13_443_71131.html

13) 내각부, 『平成26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3.12.21.



고, 고용자 수 증가 및 완전실업률 하락 등 노동시장 개선이 계속됨에 따라 디플레이션 탈출이 확실하게 진전될 전망

-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 ‘일본재부흥전략’¹⁴⁾ 실행의 가속·강화, 경제정책패키지¹⁵⁾의 착실한 실행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양립 실현을 목표로 함
- 2015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10년의 반으로 감소시키고, 2020년까지 흑자화를 목표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화와의 양립 실현을 목표

〈표 5〉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2012 실적 (명목)	2013추정 (명목)	2014전망 (명목)	전년 대비 증가율					
				2012		2013		2014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72.6	484.2	500.4	△0.2	0.7	2.5	2.6	3.3	1.4
완전실업률	4.3	3.9	3.7						
소비자물가	△0.3	0.7	3.2						
GDP 디플레이터	△0.9	△0.1	1.9						
GDP 대비 경상수지 (명목, %)	0.9	0.9	0.9						

자료: 내각부, 『平成26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 내각부, 2012년도 국민경제계산 발표(2013.12.25.)¹⁶⁾
 - 2012년도 실질 GDP 증가율은 전년 대비 0.7%로 3년 연속 증가
 - 2012년도 일반정부의 기초재정수지(명목GDP 대비)는 중앙정부(△6.7%)와 사회보장기금(△1.3%)이 감소함에 따라 △7.5%를 기록

〈표 6〉 2012년도 국민경제계산

(단위: 전년 대비, %)

항목	2011년	2012년
국내총생산	0.3	0.7
국내수요	1.3	1.5
민간수요	1.6	1.5
공적수요	0.5	1.4
재화·서비스 순수출	△1.0	△0.8 ¹⁾
기초재정수지(명목GDP 대비)		
일반정부	△7.7	△7.5
중앙정부	△6.9	△6.7
지방정부	0.7	0.5
사회보장기금	△1.4	△1.3

주: 1) 실질성장률 대비 기여도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14) 일본재부흥전략(日本再興戦略): 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된 아베정권의 성장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활력을 이끄는 것이 주목적이며, 구체적으로는 10년 평균 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 실현을 통해 10년 후 1인당 국민총소득 150만엔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함

15) 경제정책패키지: 내각부의 ‘소비세율 인상과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해 2013.10.에 기재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 하락 위험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대책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16) 내각부, 『平成24年度國民經濟計算確報(フロー編ポイント)』, 2013.12.25.

 스페인

1. 기타

- 경제부, 순규모 약 650억유로의 2014년 재원조달 전략 발표(2014.1.8.)¹⁷⁾
 - 총 국채발행 규모는 약 2,424억유로(2013년 2,150억~2,300억유로)이고, 순규모는 2013년에 비하여 약 70억유로 감소
 - 2013년 연평균 국채금리는 2.45%로 2012년에 비해 0.5%p 하락하였고, 정부채무의 평균 상환기간은 6.2년으로 예상(2013년에는 6.34년)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영국

1. 기타

- 영국 재무부, 새로운 고용지원금(Employment Allowance) 시행 예정(2014.1.9.)¹⁸⁾
 - 2014년 4월 시행예정인 새로운 고용지원금(Employment Allowance)은 소규모기업의 신규채용 시 근로자 한명당 200파운드의 국민보험기여금(NICs)¹⁹⁾을 감면하여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
 - FY2015-16까지 기업당 최대 2,000파운드씩 연간 총 55억파운드의 고용세(employment tax)가 감면될 전망

- 영국 재무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시 영국부채에 대한 분담책임 요구(2014.1.13.)²⁰⁾
 - 영국 재무부는 2014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해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 시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부채를 공평하고 균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경우,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 간 양자협상을 통해 과거부터 미래에 발생할 모든 형태의 부채(우발부채 포함)에 대해 각국의 분담비율과 상환조건을 논의할 예정

참고 1 FY2012-13 영국 부채수준

- 영국 부채 측정법은 크게 공공부문 총부채(Public Sector Gross Debt ex, PSGDex)²¹⁾, 일반정부 총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GGD),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ex, PSNDex)로 분류
 - FY2012-13 말 공공부문 총부채(PSGDex)는 GDP 대비 약 87%인 1조 3,882억파운드, 일반정부 총부채(GGGD)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GDP 대비 약 87%인 1조 3,866억파운드, 공공부문 순부채(PSNDex)는 GDP대비 약 74%인 1조 1,851억파운드로 집계

17) 스페인 정부(La Moncloa) 보도자료, http://www.mineco.gob.es/portal/site/mineco/?lang_choose=en

18)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delivering-200-employment-tax-cut-per-employee>

19) 고용주가 지불하는 제도

20)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debt-and-the-scotland-independence-referendum>

21) 'ex'는 재정위기 동안 금융부문에 대한 개입의 일시적인 효과를 제외함을 의미



〈표 7〉 FY2012-13 부채측정 방법에 따른 영국의 부채수준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부채수준
공공부문 총부채(Public Sector Gross Debt ex) ¹⁾	1,388,273
일반정부 총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386,681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ex) ³⁾	1,185,181

주: 1) 공공부문 총부채(Public Sector Gross Debt ex, PSGDex)
= 중앙정부 총부채 + 지방정부 총부채 + 공기업 총부채 - 상호보유(cross holdings)부채
2) 일반정부 총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GGD)
= 공공부문 총부채 - 공기업 총부채
3)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ex, PSNDex)
= 공공부문 총부채 - 유동성 금융자산 - 상호보유 부채
자료: 영국 재무부, "UK debt and the Scotland independence referendum," 2014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미국

1. 예산 · 결산 등

- FY2014 Omnibus(일괄세출법안) 합의(2014.1.13.)²²⁾
 - 「Bipartisan Budget Act of 2013」에서 합의한 총재량지출한도(FY2014 1조 120억달러)에 따라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12개 부문의 세출법안을 모두 담은 FY2014 Omnibus를 합의

〈표 8〉 FY2014 부문별 재량지출

(단위: 백만달러)

분야	FY2014 재량지출		
	국방	비국방	합계
농업	-	20,880	20,880
상업 · 법 · 과학	5,000	46,600	51,600
국방	486,643	208	486,851
에너지 · 수자원개발	17,200	16,860	34,060
금융 · 일반정부	26,1,601	21,825	21,851
국토안보	-	37,669	39,270
내무 · 환경	-	30,058	30,058
노동 · 보건, 인적자원 · 교육	-	156,773	156,773
입법부	-	4,258	4,258
군사시설 · 보훈	9,808	63,491	73,229
국무 · 외무	-	42,481	42,481
교통 · 주택, 도시개발	186	50,670	50,856
합계	520,464	491,773	1,012,237

자료: 미 상원세출위원회, Subcommittee Allocations, 2013.1.13.

- CBO, FY2014 1분기 연방정부 재정적자 추정(2014.1.8.)²³⁾
 - CBO, FY2014 1분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1,82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0억달러 감소. 이는 세수 증가와 재정지출 감소에 기인
 - FY2014 1분기 재정수입은 6,640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80억달러 증가
 -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 법인세는 10% 증가

22) 미국 상원세출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room/newsroom.cfm?id=4c294104-788a-4db5-84f7-50c35de8a2d9>)

23)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December 2013, 2014.1.

- FY2014 1분기 재정지출은 8,46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0억달러(7%) 감소.
 - 부문별로 국방지출이 110억달러, 실업수당 지출이 40억달러,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70억달러 감소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지혜 전문연구원)

국제기구 주요보고서

1. OECD, Budgeting levers, strategic agility and the use of performance budgeting in 2011/12 (2013.12.16.)²⁴⁾

- 다양한 예산 메커니즘을 통한 공공자원의 재분배 및 관리에 대한 연구
 - 전략적 민첩성(Strategic agility) 관점에서 최근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행된 예산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 총액배분자율편성제(Top down spending), 지출검토(Spending reviews), 성과주의예산(Performance budgeting), 자동생산성절감(Automatic productivity cuts) 등 4가지 제도를 분석
 - 재정준칙, 중기 지출 프레임 워크, 제로베이스 예산,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등의 제도는 언급하지 않음
 - 2011~12년 OECD Survey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조사결과는 본 보고서 참고
 - 예산의 전략적 민첩성 증대를 위해서 기간별로 적절한 제도 시행이 필요
- (총액배분자율편성제) 단기 및 중기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로 금융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평가
 - (지출검토) 단기 및 중장기 구분 없이 모두 적절한 예산제도로 판단되며 최근 재정건전화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도입
 - 각 국가들은 재정긴축을 위한 지출검토 및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제도를 도입
 - 경제성장, 고용, 사회 불평등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지출검토는 단기 및 중기 예산 삭감조치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성과주의예산) 단기 예산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향 제시에 중요한 정보가 됨
 - 중기적으로 산출 및 성과(output and outcome) 데이터는 정부차원의 관리에는 적합하지만 자원 분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 연례 프로그램 및 기관 성과보고서는 효율성 판단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기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침
 - (자동생산성절감)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성을 감안하여 부처의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경상비에 적용
 -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은 매년 중앙정부 경상비 예산의 0.5% 정도를 삭감
 - 자원 재분배를 위한 단기적 효과는 작지만 중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

24)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budgeting-levers-strategic-agility-and-the-use-of-performance-budgeting-in-2011-12_budget-13-5k3ttg15bs31



〈표 9〉 기간별(단기 및 중장기) 예산제도의 효과

Budget measure	Perspective of budget agility		
	Short-term	Medium-term	Long-term
Top down spending cuts	즉각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	수년간(후속연도) 규모있는 예산절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	지속적인 지출삭감은 적절하지 않음
Spending reviews	전략적 지출검토는 지출삭감의 방향 제시	효율적 지출검토는 지출삭감의 가이드라인 및 자원 재분배에 유용	전략적 및 효율적 지출삭감은 적절함
Performance budgeting	성과데이터는 지출절감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산출 및 성과데이터는 정부관리 측면에서는 적합, 자원분배에는 부적합	성과데이터는 장기 예산프로그램의 발전에 도움
Automatic cuts in productivity dividends	즉각적인 지출절감과 관련 없음	연간 자원 재분배를 위한 적절한 방법	지속적으로 자원 재분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법

-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출삭감 및 세수 강화정책을 펼쳤으나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는 정책이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성과주의예산의 성과정보는 지출검토 과정에 반영되어 중요한 역할을 함
 - 성과주의예산 성과지표의 경우 공공자원 재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검토와 자동생산성절감은 재정여력 마련, 공공자원 재분배 그리고 예산 효율성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판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전문연구원〉

| 정책 흐름 |



- 2014년 경제정책방향
- 국회 확정 2014년 예산 주요 내용
-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2014년 경제정책방향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27일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요약

I. 대내외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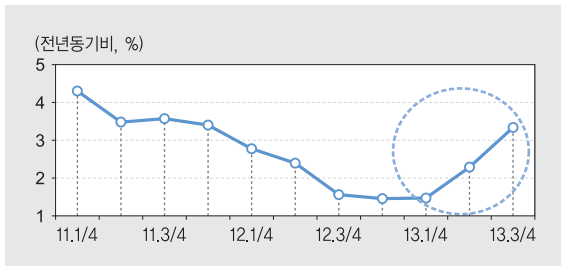
◇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과제가 산적

① 기 추경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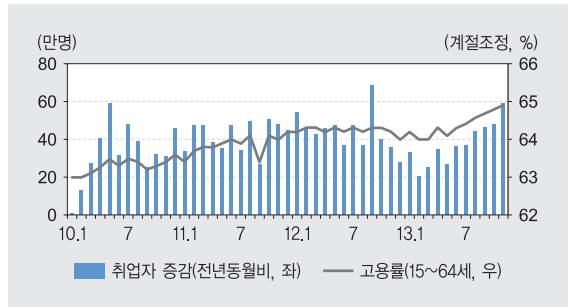
- 7분기 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를 회복하였고, 일자리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최근 40만개 이상 증가세

* 50대 이상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2/4)41 (3/4)47 (10월)48 (11월)51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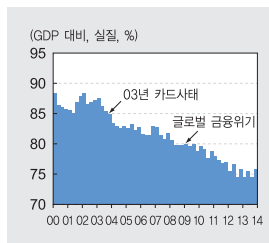
고용률과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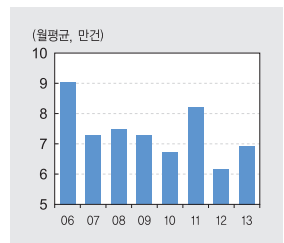
② 그러나,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산적

- 내수가 부진하여 서민·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어려움이 지속
 - 최근 소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내수 부진이 누적되었고, 주택시장 정상화도 지연

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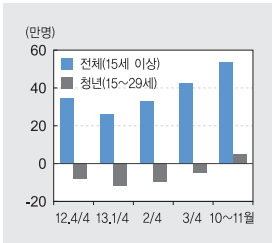
주택 매매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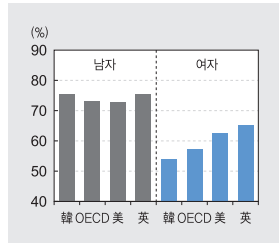
• 최근, 고용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가 상대적으로 부족

청년고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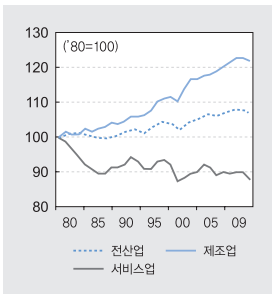
주요국 남·여 고용률 비교('12)



- 선진 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
 - 서비스업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고, 공공부문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산업별 생산성 추이

(생산성분부, 중요소생산성)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WEF)

구분	'12	'13
◇ 전체순위	19	25
• 기본요인	18	20
- 제도적 요인**	62	74
• 시장 효율성	20	23
• 기업혁신 및 성숙도	17	20

* 총 148개국 중 **정부규제 부담, 정부지출 효율성, 법체계 효율성, 정책결정 투명성 등 평가

- ③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항방, 가계부채 부담 등 대내외의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
 -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08년부터 지속해 온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가계부채 부담 지속,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어려움 등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우려

◇ '14년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저성장의 흐름으로 다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

II. 2014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 정부 중심의 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
- ◇ 청년·여성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
- ◇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대비



2014년 경제정책 방향

정책 목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정책 방향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추진 과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유지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개혁
	투자·소비 여건 개선	생계비 부담 완화	경제 민주화
	주택시장 정상화	맞춤형 복지 정착	수출·해외진출 촉진
	리스크 대응 강화	중산층 기반 강화	창조경제·미래대비
집행 점검	국정과제·정책 집행점검/협업 강화		

III.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1. 내수활력 제고

◇ 투자·소비 회복 등 민간 중심의 탄탄한 성장 유도

- ① 투자 촉진, 소비여건 개선 등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 집중
 - 규제개선 등 기업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 지역거점개발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교육비·노후불안 등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②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추어 규제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 근본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 ③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중장기 視界를 가지고 리스크 대응 강화

투자·소비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선, 투자의욕 제고 등 기업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신성장산업·지역투자·외국인투자」 등 4대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 - 외평기금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 지원 - 중소기업 S/W투자 세제지원 ▶ 서비스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교육 등 규제완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 국내관광 활성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 ▶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사교육비 경감, 주택연금공급 확충, 잡자는 돈 활용 등 소비여건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 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매입임대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수요)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 확대 등 월세지원 강화 ▶ 공유형 모기지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확대 ▶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건축·재개발·주택금융제도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속 운용 ▶ 통화: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지도록 운영,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조달과 외채상환 추진
리스크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리스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경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정책대응과 함께 G-20 국제공조 등 전방위 대응체계 확립 - 장기간 진행 가능성에 대비, 중장기 시계하에 정책역력 확보·대응 ▶ 가계부채 연착륙, 취약업종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2.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 청년·여성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노력 배가

- ①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 선취업 후진학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지원
 - 일·가정 양립 등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②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교육·의료비 등 서민부담 완화
 -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맞춤형 복지 정착
- ③ 가계지출 부담완화,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 중산층 기반 강화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선취업 후진학 촉진, 청년창업·해외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확산, 일·학습 병행제 기반 구축 - 청년전용 창업펀드 조성, 재도전 지원센터 설치 - 해외취업·인턴 통합정보망 운영, K-Move 센터 확대(3 → 7개소) ▶ 여성: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수립 - 육아휴직제도 확대,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고 민간 확산 ▶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등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생계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물가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지자체 관리 수수료 합리화 - 원가절감 노력 강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교육비·의료비·서민금융 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 ▶ 일을 통한 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확대 ▶ 고용·복지센터 설치, 공통브랜드화 등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중산층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지출 부담 완화,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 중산층 기반 강화 ▶ 자영업 경쟁력 강화

3. 경제제질 개선

◇ 우리경제가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경제제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역점

- ① '14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②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행
- ③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
- ④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대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

공공부문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관리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3/4분기말 중간평가 실시 - 조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조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재정준칙 강화, 조세지출·예산 연계)
경제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 도입된 제도들의 안정적 정착·시행 ▶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 등 상생협력기반 구축
수출 해외진출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구조 변화 선제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한류 등 서비스수출 활성화, 온라인 마켓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무역방식 활용 수출 ▶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확대 ▶ 정상외교 경제성과 극대화, FTA 활용 제고
창조경제 미래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추진 -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중국경제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

4.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정책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업, 정책집행 점검 강화

- ① 「협업·개방·공유」의 정부 3.0을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
 - 개방·공모직위에 부처간, 중앙-지방간 교류를 확대하고, 공공-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협업 활성화
 - 재정·공공부문 정보공개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수요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
 - 월간 재정동향 발간,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② 정책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 구현
 - 민·관 합동 정책현장 점검 등 정책 집행실적을 내실 있게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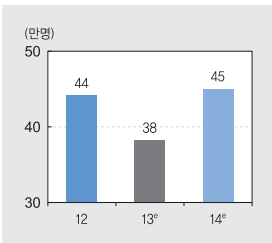
협업과 개방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공모직위에 부처간, 중앙-지방간 교류 확대 - 협업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 부여 - 공공-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 재정·공공부문 정보공개 대폭 확대, 국민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재정동향 발간,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모바일서비스 제공 - 고용관련 보조지표 발표
정책집행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과의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현장 개최, 민·관 합동 정책현장 점검 ▶ '경제정책종합포털'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집행·점검에 반영

IV. 2014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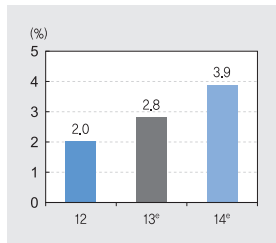
◇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등 민생안정 기반 강화

- ① **(고용)**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
 - 고용률(15~64세)은 금년(64.4%)보다 0.8%p 수준 개선된 65.2% 예상
 -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4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노력
- ② **(성장)**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지속 등으로 '10년 이후 4년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IMF, 3.6%)을 상회하는 3.9% 성장
- ③ **(물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요인이 있겠으나,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연간 2.3%에서 안정
- ④ **(경상수지)** 내수·소득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700억달러)보다 흑자규모가 줄어들어 연간 490억달러 흑자
 -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교역량 증가 등으로 연간 6.4% 증가, 수입은 수출과 내수 회복 등으로 연간 9.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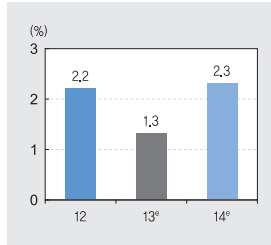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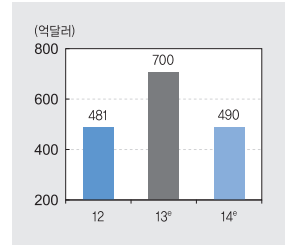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참고 2014년 경제정책 주요 추진일정

- ① **(1/4분기)** '14년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예산배정·개정세법 시행 등 정책추진기반 마련
 - 경제 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구분	내용
12월말~1월	추진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산안-세법개정안 등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 • 주요 사업예산 조기배정, 상반기 신속적인 재정운용 준비 • 개정 세법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관광 활성화방안, 통합 정책모기지 출범,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지원 확대
2월	체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관리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제출 • 정상외교 경제분야 법정부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
	추진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재정동향 발간
3월	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사교육비 경감대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 중산층 기반강화방안
	체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우선 추진,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 ② **(2/4분기)** 면밀한 사전준비·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과제들은 협업·공문화 과정을 거쳐 2/4분기 본격 추진

구분	내용	
4월	내수	•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제 채용실적 통합공시
	민생	• 유통구조 개선 성과점검과 보완대책,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체질	•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5월	내수	•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수립, 잠자는 돈 활용방안
	체질	• 조세지출·예산 연계 강화방안, FTA 활용성과 점검과 보완방안
6월	내수	• 물류서비스 효율화,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여부 점검과 개선책 강구
	일자리	• 부처별 일자리 창출효과 점검·평가체계 구축,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체질	•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③ (하반기) 상반기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필요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 경제체질 개선·구조개혁 본격화

구분	내용	
3/4 분기	내수	•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그린건축·리모델링시장 활성화방안
	민생	• 지자체관리 수수료 합리화방안, 국세청-사회보험공단 간 복지정보 공유 강화
	체질	•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 • 중점 관리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 중간평가 실시
4/4 분기	내수	•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와 경쟁시스템 구축

2014년 경제정책방향

I. 지난 1년 정책대응과 평가

1. 그간 정책대응

◇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리스크 관리 등 주요 과제에 적극 대응

- (일자리 창출) 그간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집행하고 국정과제 이행기반 구축
 - 재정확대*와 조기집행(상반기 60.3% 집행), 금리인하($\Delta 25bp$)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 * 17.3조원 추경(5.7, 국회의결), 3.8조원의 재정보강 대책 마련(6.29, 9.17, 11.13)
 - 주택시장 정상화(4.1, 8.28), 1~4차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대책(5.15)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시행
 - * 총 28.8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발굴·지원, 입지·환경규제 개선 등
 - 고용률 70% 로드맵(6.4), 창조경제 실현계획(6.5) 등 국정과제 이행기반 구축
 - (민생안정) 농수산물 수급과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을 통해 물가의 구조적 안정 노력 강화
 - * 통신(5.14)·농산물(5.27)·수산물(7.10) 분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발표
 - 보육료·양육수당·교육비 지원, 건강보험 확대, 서민 주거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 (리스크 관리) 양적완화 축소,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

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 시 플랜을 지속 보완

■ **(정책추진 기반 강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약가계부(5.31),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기반 확충

- 경제관계장관회의 부활(4.2), 현장방문*·간담회 실시 등 협업과 소통의 정책추진체계 마련

* (부총리) 새만금, 광양제철소 등 1박2일 현장방문 포함 16회, (국토부) 전세 임대주택, 새벽인력시장 등 28회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 58회 등

2. 평가

◇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한 정책노력 강화 필요

■ 저성장 흐름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경기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민생여건도 다소 개선

- **(성장)** 3/4분기 중 '11. 4/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에 진입하였으며, 민간부문 회복모멘텀도 점차 강화

* '10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2분기 연속 전기비 1%대 성장

* '09. 2/4~'10.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성장세 확대(1/4분기 1.5% → 2/4분기 2.3% → 3/4분기 3.3%)

- 소비·투자 등 내수가 점차 회복, 수출도 지난해 부진에서 완만하게 개선

* 내수의 성장기여도(전기비, %)(12. 4/4)0.4 (13. 1/4)0.6 (2/4)0.8 (3/4)1.6

* 수출(통관, 전년동기비, %): (12. 4/4)△0.4 (13. 1/4)0.4 (2/4)0.7 (3/4)2.7

- **(민생안정)**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안

정세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2. 4/4)34.2 (13. 1/4)25.7 (2/4)32.4 (3/4)42.1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11)4.0 (12)2.2 (13. 1/4)1.6 (2/4)1.2 (3/4)1.4

- **(리스크 관리)** 외채구조 개선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美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등 신흥국과 차별화

* 단기외채/총외채(%): (12. 4/4)31.1 (13. 1/4)30.2 (2/4)29.4 (3/4)27.1

* CDS 프리미엄 변동폭(6~11월, bp): (한국)△27 (인나) 52 (태국) 32 (터키) 62

■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민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않고 잠재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아직 민간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양적완화 축소·美 채무한도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
- 旣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집행노력 강화

⇒ '14년에는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를 확충하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 마련

II. 최근 경제여건과 전망

1.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그간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美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경제 대전환 진행

- ① **(세계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통화·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으나, 주택시장 호조와 소비·투자 개선 등으로 회복세
 - 유로지역은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고, 일본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세
 -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은 경기·구조적 요인 등으로 성장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둔화('00~'07년 신흥국 평균성장률 6.5%)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3. 10월,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인도
'13년	2.9	1.2	1.6	△0.4	2.0	4.5	7.6	3.8
'14년	3.6	2.0	2.6	1.0	1.2	5.1	7.3	5.1

- ② **(국제금융시장)** 美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됨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변동성이 확대
- 향후 美 양적완화 축소 속도·규모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주요국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③ **(위험요인)** 美 양적완화 축소, 일본경제 향방 등 불확실성 상존
- 美 양적완화 축소는 '08년부터 지속해 온 선진국 통화정책의 대전환으로 향후 세계경제·금융시장

에 장기간 영향을 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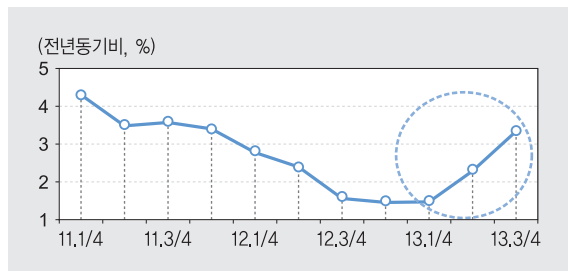
- 美 채무한도 협상과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성장둔화·국가부채 부각 등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도 세계경제의 잠재 위험요인
- * 美 예산안은 의회 통과했으나, 채무한도(14. 2. 7일 적용유예) 불확실성은 상존
- 성장전략 전환 등으로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구조개혁 미흡·고용부진 등으로 유로지역 회복세도 약할 우려

2. 국내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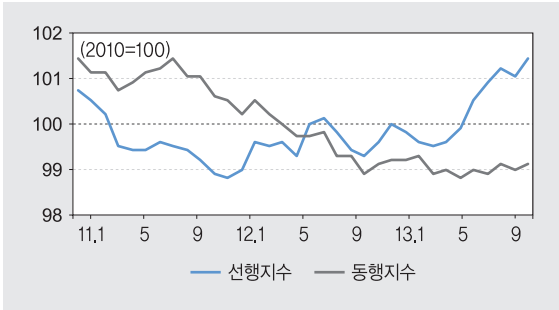
◇ 우리 경제는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내수 회복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고, 외환시장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

- ① **(경제상황)** 성장·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저성장 흐름에서 반등
- '13년 3/4분기 중 '11년 4/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전년동기 대비 3%대 성장했으나,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는 노력 지속 필요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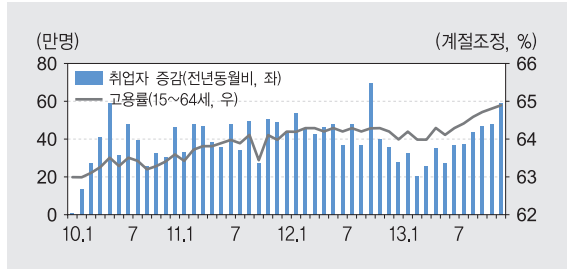


경기동행 · 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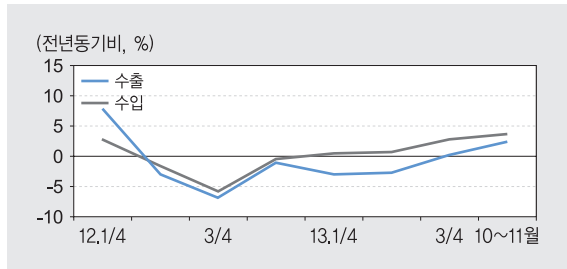


- 고용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최근 40만명대 이상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며 개선되는 모습
 - * 50대 이상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3. 2/4)41 (3/4)47 (10월)48 (11월)51
- 소비자물가는 장기간의 경기부진으로 수요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안정세 지속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13. 1/4)1.6 (2/4)1.2 (3/4)1.4 (10~11월)1.1
 - * GDP갭률(KDI · 한은, %): ('12)Δ0.5~Δ1.0 ('13)Δ1.0~Δ1.5 ('14)Δ0.5~Δ1.0
- 수출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유가안정과 내수회복세 지연 등으로 수입이 부진하면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 * 경상수지(억달러): ('13. 1/4)98.7 (2/4)198.0 (3/4)190.1 (10월)95.1 (1~10월)582.6
- 금융시장은 8월 이후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 · 환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 경제지표 · 정책 발표 등에 따라 등락 반복
 - * 8월말 대비 증감률(12. 20일 기준, %): (주가)+3.0 (원/달러환율)Δ5.2

고용률과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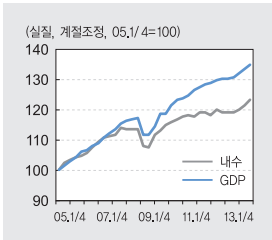


수출입 증기율(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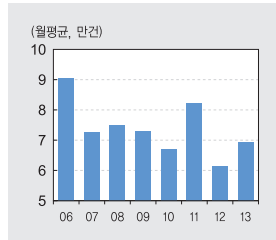


- ② (내수 여건) 최근 소비 · 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 수준을 하회
- 최근 소비가 점차 개선되고, 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내수가 미약하나마 회복세
 - * 민간소비(전기비, %): ('12. 4/4)0.8 ('13. 1/4)Δ0.4 (2/4)0.7 (3/4)1.0
 - * 총고정자본형성(전기비, %): ('12. 4/4)Δ1.6 ('13. 1/4)3.8 (2/4)2.2 (3/4)2.2
 - 다만,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중소기업 · 서민 등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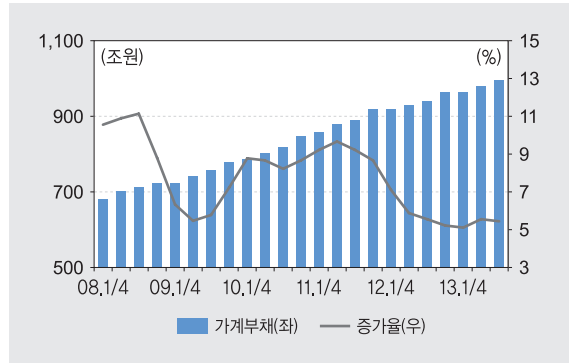
내수(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추이



주택매매 거래량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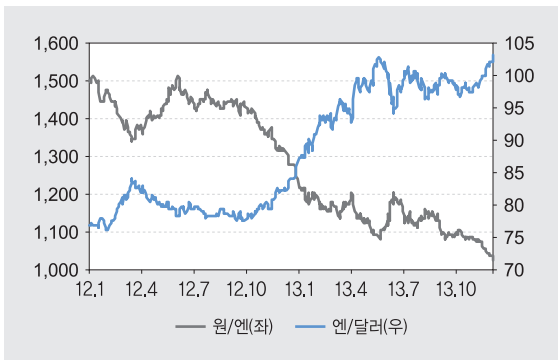


③(위험 요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엔화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변동 폭이 확대 될 가능성
-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향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상환부담 증가는 잠재적 위험요인
-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어려움, 경제활성화 방안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인 투자 회복세가 지연될 우려

* BBB+이하 회사채 순발행(억원): (13. 7)△2,319 (8)△2,022 (9)△3,204 (10)△5,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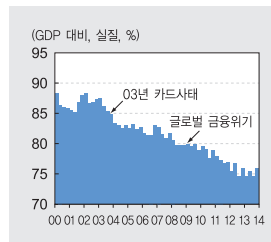
원/엔, 엔/달러 환율 추이



참고 내수의 장기부진 현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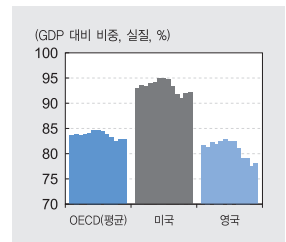
- ①(현황)** '03년 카드사태,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충격으로 크게 위축된 이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부진
- 내수부문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상이

우리의 내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OECD국가 내수 추이(00~12년)



* 자료: OECD(민간소비+총고정자본형성)

- 최근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둔화, 원리금 부담,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여건 악화 등으로 부진 지속

* 가계소득 증가율(한은, 평균, %): (01~05)6.7 (06~10)5.0 (11~12)4.7

* 원리금상환 증가율(통계청, 평균, %): (03~05)5.9 (06~10)11.9 (11~12)13.6

* 규제개혁성과 만족도(전경련, %): ('10)39.1 ('11)34.6 ('12)20.9

②(문제점)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 불안정, 체감경기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취약성 확대

- 해외의 급격한 충격 발생시 경제의 변동성 확대 우려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분기 성장률(전년동기비, '08. 3/4 → 4/4, %): <한국> 3.3 → Δ3.3 <G20> 2.3 → Δ0.7 <OECD 평균> 0.1 → Δ2.6

- 내수의 뒷받침 없이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일자리·가계소득이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어려움도 지속

*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 (내수)0.77 (수출)0.54

* 고용유발효과(한은, 명/10억원): (내수)10.5 (수출)5.5

- 특히, 투자부진은 자본축적 저하, 생산성 향상 제약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미래세대의 일자리·소득에 악영향

③(시사점)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내수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정상화, 규제개혁 등 정책대응이 긴요

3. 구조적 여건

◇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확고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필요

①(성장잠재력 저하) '추격형 성장' 등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를 보이면서, '선도형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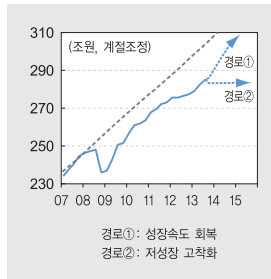
* 잠재성장률(%), KDI, '12, 11): ('81~'90)8.6 ('91~'00)6.4 ('01~'10)4.5 ('11~'20)3.6

- '14년은 글로벌 위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 흐름이 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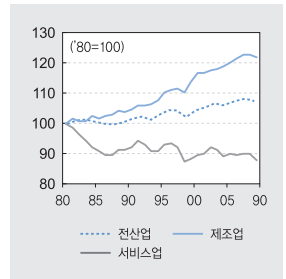
화되느냐의 분수령

-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미흡한 가운데, 특히 성장을 견인할 서비스업은 핵심 규제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 정체가 지속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산업별 생산성 추이 (생산성본부, 총요소생산성)



②(공공부문 비효율)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제도와 관행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방만경영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증가

- 현재의 재정여건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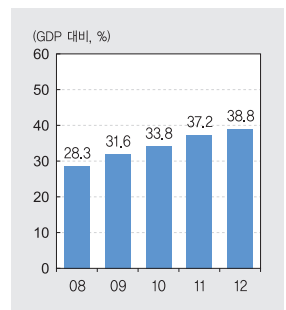
* 국가채무 전망(GDP 대비%, '11조세연: ('12 실적)34.8 ('30) 61.9 ('50)137.7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WEF)

구분	'12	'13
◇ 전체순위	19	25
• 기본요인	18	20
• 제도적 요인**	62	74
• 시장 효율성	20	23
• 기업혁신 및 성숙도	17	20

* 총 148개국 중 **정부규제 부담, 정부지출 효율성, 법체계 효율성, 정책결정 투명성 등 평가

공공기관 부채



③(구조개혁 요구) 고령화, 중국경제 부상,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우리 경제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한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

-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긴 視界 하에서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성

4. 2014년 경제전망

① **(고용)**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

- 고용률(15~64세)은 금년(64.4%)보다 0.8%p 수준 개선된 65.2% 예상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4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노력

② **(성장)**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지속 등으로 '10년 이후 4년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IMF, 3.6%)을 상회하는 3.9% 성장

- 상반기는 확장적인 거시정책 등을 통한 경기보완,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부문 개선세 확대에 연중 고른 성장세

③ **(물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요인이 있겠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연간 2.3%에서 안정

④ **(경상수지)** 내수·소득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700억달러)보다 흑자규모가 줄어들어 연간 490억달러 흑자

-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교역량 증가 등으로 연간 6.4% 증가, 수입은 수출과 내수 회복 등으로 연간 9.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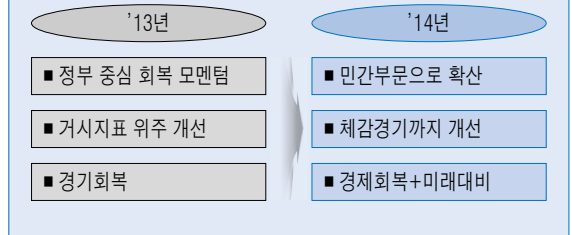
2014년 경제전망

	2013년	2014년
• 취업자증감(만명)	38	45*
고용률(% , 15~64세)	64.4	65.2
• 경제성장률(%)	2.8	3.9
• 소비자물가(%)	1.3	2.3
• 경상수지(억달러)	700	490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을 통해 45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노력

Ⅲ. 2014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2014년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총력 경주



① **(민간부문 활력 제고)** '13년 경기회복 모멘텀이 '14년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 → “내수활력 제고”

- ▶ 경기회복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되도록 “투자 촉진 및 소비여건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 ▶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 ▶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3~4년을 바라보며 리스크 대응 강화

② **(체감경기 개선)** 청년·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 ▶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70% 로드맵 본격 추진

- ▶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
- ▶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갈 필요

- ③ **(미래대비)**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대비 과제 본격 추진 → “경제체질 개선”
- ▶ 내년은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
 - ▶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행
 - ▶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촉진”
 - ▶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대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
- ◇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들의 삶 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과 점검, 협업 강화

2014년 경제정책 방향

정책 목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정책 방향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추진 과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유지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개혁
	투자·소비 여건 개선	생계비 부담 완화	경제 민주화
	주택시장 정상화	맞춤형 복지 정착	수출·해외진출 촉진
	리스크 대응 강화	중산층 기반 강화	창조경제·미래대비
집행 점검	국정과제·정책 집행점검/협업 강화		

IV. 2014년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1 내수활력 제고

◇ '13년 경기회복 모멘텀이 '14년 민간부문으로 확산·본격화될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 집중

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 ① **(재정정책)** 경기회복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
- 재정은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주요 사업예산의 조기배정 추진
 -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BTL 제도개선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
- ② **(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운영
- 필요시 공개시장 조작과 국고채 발행시기·물량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 도모
 -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제도 운용
 - 자본유출입의 양방향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국내 풍부한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조달 및 외채상환 추진
 - 외화용 김치본드(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 발행 등 공기업 외화 조달시 일정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토록 유도
 - 공기업 고금리 해외채권을 저금리로 차환하고, 일부는 상환 유도

③ (환율정책) 美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율급등락 시 시장안정 노력 강화

2. 투자·소비여건 개선

①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 의욕을 제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 既 발표된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 지속 마련(매분기)
 -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확대·신성장동력 육성 등 4대분야* 투자 촉진 프로젝트 추진

* ①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②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③ 지역 투자 ④ 외국인투자

- 규제 시스템을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행정입법을 활용한 규제개선* 우선 추진

* 시행령 이하 규제점검·완화,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완화 등

- 시설재 수입 등 투자 촉진을 위해 외평기금이 국내 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 자금 지원(일정한도 내 한시적 시행)
- 지식재산 활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S/W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지원 신설(3월)

② (서비스업 육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중심으로 분야별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추진

- 既 마련된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의료분야 해외진출, 외국교육기관 유치, SW 관련 계약제도 개선 등 추진

- 지역별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여행정보 전달체계 개선, 복합 리조트 조성 등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1월)
-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안'을 마련(9월)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선순환 구조 조성

- 경쟁제한 규제의 대폭 완화, 기술금융 활성화,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촉진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 추진

-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인프라 활용도 제고 등 '물류서비스 효율화' 추진(6월)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재제조시장, 자동차 튜닝시장, 크루즈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품질인증·관련 법규 등 인프라 확충

* 품질인증('13 → '14년: (재제조 시장) 19 → 50개 이상, (자동차 튜닝부품) 5 → 30~40개

*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6월), 크루즈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12월)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공공부문 외에 민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9월)

-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 정책전반에 대한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여부와 정책 실질지원 효과 등을 점검하여 개선대책 강구(6월)

③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강화

-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삶의 질 제고 등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3월)

- 자치법규 정비 및 경쟁시스템 구축(12월)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복지 등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수립(5월)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14년 중 7개 기관 이전)하고,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추진

*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개최,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 통합 공시(4월) 등

④ (소비여건 개선) 사교육비·노후불안 등의 부담 없

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방과후 학교 내실화, 투명한 사교육시장 조성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 을 마련(3월)하여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인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주택 연금 공급확충을 추진*(3월)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4월)
- * 민간 주택연금 공급기반 마련, 주택연금 초기 가입부담 완화·가입대상 확대 등
- **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 휴면예금·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 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5월)

3. 주택시장 정상화

① (전월세 시장 안정) 전세 → 월세 등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응 추진

- (공급) 건설임대 민간참여 확대*, 청약 등 규제개선을 통한 매입 임대 활성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3월)
- * (예) BTL·리츠 등 사업모델 다양화, 주택기금 저리자금 지원 등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입주기준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 합리화*
- * (예) 소득·자산기준 정비, 임차인 소득·자산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등
- (수요)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지원 강화(3월)
- * 월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50 → 60%), 공제한도 확대(300 → 500만원)

② (주택거래 정상화)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제

도개선 추진

- 공유형 모기지 공급 대폭 확대(0.3만호 → 1.5만호), 통합 정책 모기지* 출범(1월)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 * 생애최초 등 주택기금 자금지원과 우대형 보증자리론(주공공)의 대출요건·금리 등 일원화
- 인구·가구구조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청약제도*와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주택금융 등 제도 개선
- *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

③ (주거비 경감) 월세 부담 완화 등 서민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시행

-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를 확대·개편*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임대료 지원 강화
- * 개편안: (지원대상) 73만가구 → 97만가구,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만원 → 11만원
- 전세임대·공공기숙사 건설 등 대학생 주거비 경감,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통해 생애주기상 주거취약 시기 지원

4. 리스크 대응 강화

① (대외 리스크 대응) 美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등에 대해 철저히 대응

- 국내외 경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정책대응*과 함께, G-20, APEC 등과의 국제공조 등 전방위 대응체계 확립
- * i) 거시건전성 조치의 탄력적 운용, ii)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지속 보완, iii) 외채구조 개선 등 대외부문 건전성 제고 노력 등
-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3~4년 중장기 視界를 가지고 정책여력 확

보·대응

② (가계부채 연착륙)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1월)

- 제2금융권 대출건전성 규제정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 축소*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

* 고액전세 보증금 차주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 차등화 등

-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 촉진

* 주금공 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13년 25조원 → '14년 29조원) 및 거치기간 축소(2년 → 1년, 일시상환대출 등의 건전성 기준 강화

③ (기업 구조조정) 취약 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마무리하고 사전부실 방지를 위해 관련제도 보완

- 해운·조선·건설 등 경기취약업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정상화와 일시 유동성 애로기업 회사채 차환 지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13년말 → '15년말), 주채무계열 범위 확대*, 시장성 차입금 과다계열 공시 등으로 사전 부실관리 강화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의 0.1%에서 0.075%로 하향조정

2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 청년·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노력 배가

1.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① (청년)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과 선취업 후진학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과 해외취업 지원

* 청년위원회와 협업 강화, 청년고용 TF 등을 통한 일자리 집중 발굴

- 일·학습 병행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확산 등을 통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지속 확산
- 청년전용 창업펀드, 재도전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청년창업 유도
- 해외취업·인턴 통합정보망 운영, K-Move 센터 확대(3 → 7개소)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 취·창업을 적극 지원

②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참가 제고 (여성고용 TF를 중심으로 추진)

- 여성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수립

* 아이돌보미(여가부), 방과후 초등돌봄(교육부), 일시보육시범사업(복지부) 등

- 육아휴직제도 확대와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 확산

- ③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유도
 -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고 민간확산 유도
 - 각 부처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기 점검·평가하는 체계 구축(6월)
- ④ **(상생적 노사관계)**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제도 개선
 - 임금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추진(1월)
 - 정년 연장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1월)

2. 생계비 부담 완화

- ① **(생활물가 안정)** 유통구조 개선과 체감물가 안정 노력 강화
 -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보완하고 시장경쟁 확산
 - 수입제품 경쟁촉진과 가격하락 유도를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부분 경쟁 제고방안' 마련(3월)
 - 농·수산물과 석유·통신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4월)
 - 정보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물가지수 개선
 -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생필품 등 가격비교와 원가정보 공개 실시(1월)
 - 물가지표 체감도 제고를 위해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조정(1월)
 -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조지수 개발 등을 통해 공식 물가지표 보완도 추진
 - 부동산 중개 등 지자체관리 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9월)

- ② **(공공요금 안정)**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여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공공기관의 지구노력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최대한 유도하고, 원가분석을 제3기관(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검증 강화
- ③ **(서민부담 완화)**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교육비)** 국가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비부담 경감
 - 손계층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지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셋째아이 이상 대 학등록금 신규 지원
 - **(의료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세분화(3 → 7단계)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 → 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향(400만원 → 500만원)
 - **(서민금융)** 취약계층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 맞춤형 복지 정착

- ① **(맞춤형 복지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일을 통한 복지 강화

* 가족가구: (최대지급액) 70만~200만원 → 210만원 (소득요건) 1,300만~2,100만원 → 2,100만~2,500만원 이하

• 기초연금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노후소득 보장 강화

*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월 10만원 → 최대 20만원 지급

②(복지전달체계 효율화)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설치, 공통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

•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간 복지정보 공유 강화

* 국세청의 EITC 관련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과 공유 추진(9월)

③(공동체 복지) 나눔문화 확산 등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공동체 복지 추진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4월)

* (예) 근로자복지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기숙사 등 → 사내병원 등 추가) 등

4. 중산층 기반 강화

①(중산층 기반 강화) 가계지출 부담 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 마련(3월)

* 정부부처와 연구기관(KDI·보사연·노동연·금융연 등) 협업을 통해 추진

• 현행 소득기준(중위소득의 50~150%) 외에 중산층 생활의 핵심요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 정립

②(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자영업자 자생력 확보와 과잉경쟁 완화 유도 등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6월)

3 경제체질 개선

◇ 공공부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미래대비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여 "경제체질 개선"

1. 공공부문 개혁

①(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필요시 보완대책 발표 추진

• 중점 관리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3/4분기말 중간평가 실시

* 중점 관리기관 이외 기관은 1/4분기까지 정상화 계획 제출, 지속 점검

-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7년까지 200% 수준(12년 220%)으로 관리

• 조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특히 4대분야(해외자원개발·정보화·중소기업·고용복지) 우선 추진(3월)

• 중앙·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공개(1월)

②(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위험 모니터링과 재정준칙 강화,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 중앙 재정부담으로 전이 가능한 분야(공기업·지방정부 등)에 대한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장기재정 전망 추진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분야별 세출절감 노력 강화
- 통합성과관리 등 조세지출·예산 연계 강화방안 마련(5월)

* (예) 예산 성과계획서에 관련 조세지출 내용 포함 등

- 국고금·국유재산 등의 조달·운용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9월)

* (예)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및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2. 경제 민주화

① **(조화로운 기업생태계 구축)**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상생·발전하는 환경 조성

- 경제력 남용 방지·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既 도입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지속 정비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등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규제개편* 추진

* 지주회사의 금융지회사 보유 허용,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확대,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②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독과점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대형 유통업체·가맹사업본부 등의 중소 납품업체와 가맹사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 독과점 산업별 진입장벽 현황 점검 등을 포함한 '산업별 시장분석 보고서' 작성·발간(9월)

3. 수출·해외진출 촉진

① **(무역구조 변화 선제대응)** 서비스·환경 교역증가, 중국 내수시장 확대 등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선제대응

-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중계·가공 무역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 수립(3월)

* 석유 중계무역시장 창출, 가공무역을 위한 무역금융상품 신설(무보) 등

-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Green Export 100)을 추진(3월)하고, 제2의 파프리카 발굴 등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 마련(4월)

- 보건의료·한류·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6월)

- 온라인 마켓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수립(6월)

②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 금융·마케팅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 수은·무보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모바일 통관시스템 구축 등 국내 통관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중소기업 물류비용 절감(6월)

* 수은 금융지원(조원): (13)96.6 → (14)102.8

무보보험지원(조원): (13)211 → (14)215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 마련(6월)

③ **(해외진출 활성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출자*로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설치(1월)

* 수출입은행 출자: 5,100억원, 무역보험공사 출연: 1,400억원

-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 *를 구성(3월)하여, 공공부문 투자기관들간 투자정보 공유 등 해외투자 효율화

* KIC,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우정사업본부, 각종 공제회 등 참여

④ (글로벌 영토 확장) 정상외교와 FTA 체결·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진출 확대

- 정상외교 경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사전준비 및 후속조치 점검체계 구축(1월)
- 既 발효중인 FTA 활용성과를 점검하여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5월)하고, 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과의 FTA 조속 타결 추진
- 한중·한중일 FTA 등 역내 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심층 영향분석·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TPP 참여 여부 결정

4. 창조경제·미래 대비

① (창조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식·기술 흐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 既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수요 등을 반영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발굴·추진(연중)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확대·개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구성·운영

-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으로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조성 추진(연중)
- 창업·R&D투자·판로개척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과 규제사항을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 마련(6월)

* (예)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합병시에 적용되는 기술혁신형 M&A 세제혜택을 50% 초과 주식 인수

시에도 지원 등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ICT 등 신성장분야 공정거래제도 보완

* 신성장분야의 특허 및 신기술 남용행위에 대한 법위반 기준 보완, 감시 강화 등

② (창조금융 기반 강화)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 기술평가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방안 마련(1월)
- 창업 촉진과 투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4월)
-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 특허법 개정(9월)

③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 추진(9월)

-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정책대안 마련

* (예시) 공정경쟁 촉진, 창업·벤처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 중장기 주택시장 구조변화 대응, 재정건전성 제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공공부문 개혁, 중국 경제 변화 대응,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 에너지·자원확충 등

V. 경제정책 추진기반 강화

◇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업, 개방·공유와 정책집행·점검 강화

1. 협업과 개방·공유

- 「협업·개방·공유」의 정부 3.0을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
 - (협업) 부처간, 정부-지방간, 공공-민간부문간 다양한 정책 협력 기반 확대
 - 개방·공모직위에 부처간, 중앙-지방간 교류를 확대하고 협업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 부여
 -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14년 연구용역) 등 공공-민간부문간 다양한 협력 모델과 정책사례 발굴
 - (개방·공유) 재정·공공부문 정보공개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수요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
 - 공공부문 재정정보 공개를 위해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2월)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14. 下)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모바일 서비스 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지역통계(시군구) 확대(7월), 고용관련 보조지표인 노동저활용지표 발표(11월) 등

2. 정책집행 점검 강화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집행실적을 내실 있게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

통 강화

- * 당초 계획에 따라 대책수립·제도개선 등이 완료된 과제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때까지 후속조치 등 지속 점검
- 민-관합동 정책현장 점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현장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 구현

-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KDI 경제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경제정책종합포털' 구축·운영

* 각 부처의 정책추진 상황 등록 → 국민 의견제출 → 정책집행·점검에 반영

국회 확정 2014년 예산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4년 1월 1일 예산실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에서 발표한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 주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재정총량

- 총수입은 정부안(370.7조원) 대비 △1.4조원 감소(국세 △2.0조원, 세외수입 +0.6조원)한 369.3조원
 - 총지출은 정부안(357.7조원) 대비 △1.9조원 감소(감액 △5.4조원, 증액 3.5조원)한 355.8조원
 - * 지방소비세 전환율 3%p 추가인상(기준 5% → 정부안 8% → 최종 11%)에 따라 총수입·총지출(교부세·교부금, 예비비) 규모가 정부안 대비 각 △2.0조원 감소
- 재정건전성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관리재정수지는 △25.5조원(GDP 대비 △1.8%)으로 0.4조원 개선
 - 국가채무는 514.8조원(GDP 대비 36.4%)으로 △0.4조원 축소

(단위: 조원, %)

	'13년		'14년		증 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13대비* (C-A) %
■ 총수입	372.6	360.8	370.7	369.3	△1.4	△3.3 △0.9
■ 총지출	342.0	349.0	357.7	355.8	△1.9	13.8 4.0
■ 관리재정수지	△4.7	△23.4	△25.9	△25.5	0.4	
(GDP 대비, %)**	(△0.3)	(△1.8)	(△1.8)	(△1.8)	-	
■ 국가채무	464.6	480.3	515.2	514.8	△0.4	
(GDP 대비, %)**	(35.0)	(36.2)	(36.4)	(36.4)	-	

* '13년 본예산 대비

**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12. 27일)에 따른 명목GDP 적용

II. 주요 국회 증액내역

- 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② 경제활력 회복, ③ 일자리 확충, ④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사업 증액

참고: 정부안 대비 감액내역

- ◇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소 △0.8조원
- ◇ 사업계획 변경, 우선순위 조정 등 △1.7조원
- ◇ 국채 이자조정 △1.0조원
- ◇ 예비비 △1.8조원

1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1) 노인·장애인·농어업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① (노인·장애인) 노인돌봄 강화 및 장애인 편의 증진
 -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등을 '14년에도 지원
 - * ('13) 293 → ('14정부안) - → ('14최종) 293억원
 - 독거노인 대상 자조모임 구성·운영(신규, 25억원)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뒷받침

*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13) → ('14정부안) 35 → ('14최종) 42억원

-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강화

* ('13) 50(258대) → ('14정부안) 45(231대) → ('14최종) 55억원(279대)

② (영유아·아동) 부모 육아비용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 확충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 ('13) 1,052 → ('14정부안) 1,230 → ('14최종) 1,816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도입 (신규, 50억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 확대 설치

* ('13) → ('14정부안) 20(2개소) → ('14최종) 30억원(3개소)

③ (농어업인) 농가 경영·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쌀 고정직불금(80 → 90만원/ha) 및 동계 이모작 직불금(20 → 40만원/ha) 지원단가 인상

* 쌀 고정직불금: ('13) 6,984 → ('14정부안) 6,880 → ('14최종) 7,740억원

* 이모작 직불금: ('13) → ('14정부안) 452 → ('14최종) 905억원

- FTA 이행에 따른 농가 구조조정 연착륙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 확대

* 폐업지원금: ('13) 300 → ('14정부안) 627 → ('14최종) 1,027억원

- 영농규모화 자금(대출금리 2 → 1%) 및 농촌 주택 개량 자금(대출금리 3 → 2.7%, 대출한도 5 → 6천만원) 용자조건 완화

④ (참전유공자·국가대표) 사회적 예우 및 보상 확대

-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추가 인상

* ('13) 5,298 → ('14정부안) 5,436 → ('14최종) 5,764억원

* 참전수당: ('13) 15 → ('14정부안) 16 → ('14최종) 17만원/월
무공수당: ('13) 21~23 → ('14정부안) 22~24 → ('14최종) 23~25만원/월

- 2014년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국가대표선수 수당 1만원 인상(4 → 5만원/일)

* ('13) 76 → ('14정부안) 76 → ('14최종) 96억원

⑤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 생활 밀접형 지원 확대

- 농어촌·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13) 411 → ('14정부안) 596 → ('14최종) 671억원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13) 43 → ('14정부안) 56 → ('14최종) 70억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 생활안정자금용자: ('13) 607 → ('14정부안) 666 → ('14최종) 819억원

(2) 보육·교육 지원 강화 및 주거·의료·문화 복지 확충

① (보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 인상

※ 기준보조율(서울/지방, %): (현행) 20/50 → (정부안) 30/60 → (최종) 35/65

* 보육료: ('13) 25,944 → ('14정부안) 30,765 → ('14최종) 33,292억원

* 양육수당: ('13) 8,810 → ('14정부안) 11,209 → ('14최종) 12,153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확충(100 → 150개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축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13) 165 → ('14정부안) 243 → ('14최종) 353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13) 86 → ('14정부안) 36 → ('14최종) 57억원

- 0~2세 보육교사 수당(근무환경개선비) 월 3만원 인상(12 → 15만원/월)

* ('13) 964 → ('14정부안) 1,052 → ('14최종) 1,356억원

②(교육)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의 질 제고

-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14년 등록금 부담 경감률 45% 달성)
* ('13) 27,750 → ('14정부안) 33,075 → ('14최종) 34,575억원
- 대학 입시전형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 ('13) 395 → ('14정부안) 410 → ('14최종) 610억원
-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1,008억원)하여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

③(주택)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3 → 5만 가구)
* ('13) - → ('14정부안) 236 → ('14최종) 294억원
-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을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확대(6 → 9개소)하고 뉴타운 지역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 강화
* 도시재생사업: ('13) 5 → ('14정부안) 243 → ('14최종) 306억원
* 재정비촉진사업: ('13) 1,100 → ('14정부안) 1,100 → ('14최종) 1,250억원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 ('13) 850 → ('14정부안) 400 → ('14최종) 500억원

④(보건·의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
* ('13) 100 → ('14정부안) 93 → ('14최종) 186억원
- 지역 거점병원에 대학병원 의료인력 지원 확대, 격오지 건강검진센터 설치(신규, 10억원) 등 취약지역 의료안전망 보강
* 지역병원 의료인력 지원: ('13) 5(5) → ('14정부안) 30(30) → ('14최종) 50억원(50명)
- 자살동기 파악 등 심리적 부검체계 구축 지원(신규, 10억원)

⑤(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 통합문화이용권(연10만원) 발급대상 10만명 확대(140 → 150만명)
* ('13) 421 → ('14정부안) 481 → ('14최종) 516억원
-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 지원(신규, 53억원)

2 경제활력 회복

①(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 SOC 투자 확대

-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3%p 추가 인상(기존 5% → 정부안 8% → 최종 11%)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
- SOC 투자규모는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23.3 → 23.7조원)
 -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 고속도로 건설: ('13) 15,355 → ('14정부안) 13,396 → ('14최종) 14,094억원
 - * 고속철도 건설: ('13) 16,600 → ('14정부안) 17,166 → ('14최종) 17,928억원
 - 지역거점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인프라 정비
 - * 항만 투자규모: ('13) 12,317 → ('14정부안) 11,975 → ('14최종) 12,091억원
- 지역 환경시설을 확충하여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환경시설 확충(하수관거정비 등): ('13) 23,381 → ('14정부안) 23,312 → ('14최종) 23,859억원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
 - * 2014 인천아시안게임: ('13) 1,313 → ('14정부안) 821 → ('14최종) 1,046억원
 - * 20014 인천장애인경기: ('13) 61 → ('14정부안) 108 → ('14최종) 168억원

* 2015 광주U대화: ('13) 603 → ('14정부안) 714 → ('14최종) 819억원

-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강화(약 100개 분야 대상)

* 지방대학 특성화: ('13) 1,437 → ('14정부안) 1,931 → ('14최종) 2,031억원

②(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프라 등 취약부문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신규, 15억원)

- 수출 지원센터 확충(11 → 12개소),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13) 417 → ('14정부안) 517 → ('14최종) 524억원

- 지역 문화·관광 상품, 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지원 확대

* ('13)147(21개) → ('14정부안) 161(23개) → ('14최종) 189억원 (27개소)

③(성장잠재력 확충) 창조경제 기반 조성 및 신시장 개척 등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타운(1 → 3개소) 및 실습·체험 공간인 무한상상실(20 → 40개소) 확충

* 창조경제 기반 조성: ('13) - → ('14정부안) 45 → ('14최종) 71억원

* 무한상상실: ('13) - → ('14정부안) 11(20개소) → ('14최종) 20억원(40개소)

- 3D 프린팅 관련 소재·기술 개발(신규, 40억원), 농림 분야 수출중자 개발 등 신시장·신산업 개척을 위한 투자 확대

* Golden Seed 프로젝트(47개부처): ('13) 351 → ('14정부안) 374 → ('14최종) 384억원

-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 지원: ('13) 1,461 → ('14정부안) 1,384 → ('14최종) 1,419억원

3 일자리 확충

①(창업 지원) 창업 활성화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ICT·콘텐츠·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확충(2 → 5개소)

* ('13) 75 → ('14정부안) 75 → ('14최종) 135억원

- 모바일 기반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 전용 '앱(App) 창작터' 3개소 신설(신규, 10억원)

②(재정지원 일자리) 직접 일자리 확충 및 정년연장 지원 강화

- 전문직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1.5만명 추가 확대(1.5 → 3만명)

* 노인일자리(복지부): ('13) 2,442(23만) → ('14정부안) 2,997(29.5만) → ('14최종) 3,063억원(31만명)

- 정년연장 지원금 지원대상 3천명 수준 확대(1.5 → 1.8만명)

* 정년연장지원금: ('13) 109 → ('14정부안) 277 → ('14최종) 324억원

③(근로자 처우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인상

* 가정폭력시설, 성폭력시설, 이주여성지원 시설, 청소년 쉼터 등

- 아이돌보미,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 고용주 부담분은 국가가 지원(+50억원)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기간을 1개월 연장(10 → 11개월)

4 국민안전 확보

1 (생활안전) 4대 사회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관리 강화
 - * 방사능안전관리: '13) 6 → ('14정부안) 13 → ('14최종) 22억원
- 특수 소방장비, 응급구조 장비 보강으로 안전사고 대응 강화
 - * 특수소방장비: '13) 19 → ('14정부안) 17 → ('14최종) 32억원
 - * 응급구조장비: '13) 221 → ('14정부안) 211 → ('14최종) 246억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 * 재해예방사업비: '13) 7,653 → ('14정부안) 7,749 → ('14최종) 8,030억원

2 (국가안보) 군 복무여건 개선 및 방위역량 강화 중점 지원

- 급식비 인상('13 대비 정부안 3.3% → 최종 6.5% 증), 체육·문화쉼터(269개소 조기 완공), 관사 확충(606 → 1,048세대) 등 장병복지 향상
 - * 병영문화쉼터: '13) 139 → ('14정부안) 140 → ('14최종) 390억원
 - * 관사(신축): '13) 68 → ('14정부안) 83 → ('14최종) 183억원
-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적기 확보
- 독도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입도 지원센터 설치(신규, 30억원)

III. 향후 계획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 3일(금)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13예산		'14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13대비(C-A)	증가율
◇ 총지출	342.0	349.0	357.7	355.8	△1.9	13.8	4.0
1. 보건·복지·고용	97.4	99.3	105.9	106.4	0.6	9.0	9.3
2. 교육	49.8	49.9	50.8	50.7	△0.1	0.9	1.9
(교부금 제외)	(8.7)	(8.8)	(9.5)	(9.8)	(0.3)	(1.1)	(12.9)
3. 문화·체육·관광	5.0	5.1	5.3	5.4	0.1	0.4	7.7
4. 환경	6.3	6.5	6.4	6.5	0.1	0.2	2.5
5. R&D	16.9	17.1	17.5	17.7	0.2	0.9	5.1
6. 산업·중소·에너지	15.5	16.7	15.3	15.4	0.1	△0.1	△0.9
(중소기업)	(6.6)	(7.9)	(7.0)	(7.0)	(-)	(0.4)	(5.9)
7. SOC	24.3	25.0	23.3	23.7	0.4	△0.6	△2.5
8. 농림·수산·식품	18.4	18.9	18.6	18.7	0.2	0.4	2.0
9. 국방	34.3	34.5	35.8	35.7	△0.1	1.4	4.0
10. 외교·통일	4.1	4.1	4.2	4.2	-	0.1	2.3
11. 공공질서·안전	15.0	15.2	15.7	15.8	0.1	0.8	5.1
12. 일반·지방행정	55.8	56.2	58.7	57.2	△1.4	1.4	2.6
(교부세 제외)	(20.3)	(20.7)	(22.6)	(21.6)	(△1.0)	(1.3)	(6.3)

* '13년 본예산 대비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3. 12. 31(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 등 '1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기재위는 그간 조세소위를 18차례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음
- 금일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세법개정 세수효과*

(단위: 조원)

	정부제출안(A)	기재위 수정(B)	(B - A)
총세수효과	+1.96	+2.19	+0.23
'14년 세수효과	+0.43	+0.37	△0.06

참고 I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의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소득세법

1)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과표구간 및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4,600만원</td> <td>15%</td> </tr> <tr> <td>4,6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3억원</td> <td>3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38%</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3억원 → 1.5억원 초과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 rowspan="5">(좌 동)</td> </tr> <tr> <td>1,200~4,600만원</td> </tr> <tr> <td>4,600~8,800만원</td> </tr> <tr> <td>8,800~1.5억원</td> </tr> <tr> <td>1.5억원 초과</td> <td>38%</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38%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 → 1.5억원)

- ◇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 → 1.5억원)에 따른 효과
 - 세수효과: +4,700억원
 -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 4.1만명 → 13.2만명
 -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50만원 세부담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50만원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00만원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50만원

2 종교인 과세 관련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소득세법 §73①, §155의5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적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 부담 	<p><계 류></p>

수정이유 원칙적으로 과세방침 결정. 다만, 과세시기·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

3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소득세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13. 12월까지 적용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13. 12월까지 적용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60% ■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미만 보유: 50% • 1년~2년 미만 보유: 40%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6~38%)+10%p • (적용기한) '13.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6~38%) - 기본세율(6~38%)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기본세율(6~38%) • ('15년 이후) 기본세율(6~38%) +10%p 추가과세 ■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 1년~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항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80 • (적용기한) 삭제

수정이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4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 (총급여 7,000 이하) 63만원 •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점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7,000 이하) 63~6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만원-(5,500만원 초과 급여액×50%) • (총급여 7,000 초과) 50~6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만원-(7,000만원 초과 급여액×50%)

수정이유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급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점감 구간 신설조정

5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기부 세액공제를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수정이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적정화를 위해 공제율 수준 조정

6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2,500만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수정이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확대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 발급 기준금액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적용시기) '14. 1.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시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적용시기) '14. 7.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 연기

8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의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5①)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보증금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적용기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16. 12. 31.

수정이유 소형주택 전세 비과세에 대한 주기적인 효과 점검 필요

법인세법

1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 §55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30%p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 (좌 등)

수정이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하(조특법 §126의2②)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15% → 10% • (적용시기) '14. 1.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p><삭 제></p>

수정이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용카드 공제율 현행 유지

2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최저한세율(일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1,000억원 초과	17%

수정이유 감면법인간 형평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저한세율 조정

③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11, §25의2, §25의3, §25의4)

정 부 안	수 정 안
<p>■ 각종 투자세액공제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R&D설비) 10% → 대기업 3%, 중견 4%, 중소기업 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7% → 대기업 3%, 중견 4%, 중소기업 5% 	<p>■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정부안보다 1%p 인하폭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 대기업 3%, 중견 5%, 중소기업 10% 7% → 대기업 3%, 중견 5%, 중소기업 7%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폭 완화

④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당기분 방식 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td> <td>25</td> </tr> <tr> <td>중견기업 1~3년차</td> <td>15</td> </tr> <tr> <td>중견기업 4~5년차</td> <td>10</td> </tr> <tr> <td>중견기업</td> <td>8</td> </tr> <tr> <td>일반기업</td> <td>3~6*</td> </tr> </tbody> </table> <p>*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1/2* 한도: 6%</p>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p>■ 일반기업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 한도 축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td> <td>25</td> </tr> <tr> <td>중견기업 1~3년차</td> <td>15</td> </tr> <tr> <td>중견기업 4~5년차</td> <td>10</td> </tr> <tr> <td>중견기업</td> <td>8</td> </tr> <tr> <td>일반기업</td> <td>3~4*</td> </tr> </tbody> </table> <p>*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 1/2* 한도: 4%</p>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6*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3~4*																										

수정이유 대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 적정화

⑤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p>■ 적용대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등)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수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⑥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정 부 안	수 정 안
<p>■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폐자원: 6/106 → 3/103 중고자동차: 9/109 → 5/105 (일몰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연장('13년말 → '16년말) 	<p>■ 공제율 점진적 축소 및 일몰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폐자원: 5/105 ('14~'15년) 3/103 ('16년) 중고자동차: 9/109 (일몰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폐자원: 3년 연장 ('16년말까지) 중고자동차: 1년 연장 ('14년말까지)

수정이유 사업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폭을 완화하고 일몰기한 조정

7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수정이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8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2의3, §12의4 신설)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인수법인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 기술가치 평가금액×지분비율 • (인수법인) 내국법인 • (피인수법인)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인 합병·주식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 • (적용기한) '15. 12. 31

수정이유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9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6의7 신설)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 (교환대상 주식)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 (과세특례)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수정이유 벤처 투자 지원을 위해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10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시 과세이연 신설(조특법 §46의8 신설)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주 또는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 (경영권 이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매각할 것 • (재투자비율)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 • (과세특례) 재투자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수정이유 벤처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도입

11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세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설립 후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자 (적용기한) '14.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대상 추가 (대상추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좌 등)

수정이유 중소기업 자본확충을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12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펀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 '15. 12. 31까지 가입분

수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13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91의15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우량채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추가)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펀드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적용기한) '16. 12. 31까지 가입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입 * BBB 등급이하 비우량채 또는 코넥스주식 30% 이상을 포함한 국내채권 등 60% 이상 편입 (좌 등) (좌 등) (적용기한) '14. 12. 31까지 가입분

수정이유 코넥스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신설하되, '14. 12. 31까지 한시적 실시 후 지원효과 평가

14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 §106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5. 12. 31

수정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5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
(조특법 §104의26 신설)

현행 (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추진 비용(조합임원 연대보증) • (시공사 등) 채권포기*시 해당금액의 손금산입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 (조합 등) 채무면제이익은 익금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

수정이유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16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70의2 신설)

현행 (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농업인이 농지·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 (과세특례)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 환급

수정이유 경영위기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

17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을 조정(조특법 §77, §77의3, §85의10)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보상) 20% → 10% • (일반채권보상) 25% → 15% • (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 40% → 20% 5년 이상: 50%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 20% - 30%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30% •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30% → 20%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용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30%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30% →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 25% • 40%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20%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수정이유 토지 수용 등의 경우 보상수준은 현실화되었으나, 강제로 수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을 축소폭 완화

18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99의4)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고향주택(3년 이상 보유) 이외의 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에 대한 농어촌주택·고향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수정이유 전통 한옥이 일반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주택 기준금액을 인상

19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비(조특법 §104의5, §104의8)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폐지 * (현행)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인원 1명당 100원 세액공제 ■ 법인세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 (현행)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세액공제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VAT) 건당 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현행 유지

수정이유 전자신고 세액공제 유지를 통한 전자신고 정착 지원

20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조특법 §104의22)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폐지 • 운동경기부(장애인 포함) 설치시 3년간 운영비용의 10% 공제 <추 가> • (적용기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일몰폐지 및 확대 • (좌 등) •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시 5년간 운영비용의 20% 세액공제 • (좌 등)

수정이유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적용기한 폐지

21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개발소비세 등 •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적용기한) '13.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저조광권자 등 조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다만,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부가가치세만 면제 <삭 제> ■ (적용기한) '16. 12. 31

수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수정이유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 제한 완화

23 조세지출 일몰도래·신설시 사전평가 의무화 신설
(조특법 §142)

현행 (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 성과평가가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일몰도래제도 및 신설제도 • (평가) 전문연구기관에서 경제성 등 평가 • 성과평가 결과 국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도래 제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신설 제도) 법률안 제출시 첨부 ■ (시행시기) '15. 1. 1

수정이유 조세지출 연장, 폐지 및 신설시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지출 성과평가 의무화

24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공제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수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상증법 §45의3)

정부안			수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과세요건 완화 〈신설〉 •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추가 완화 •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 중소기업·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추가 완화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일반법인	30%	3%	일반법인	좌동	좌동
중소법인	30% → 50%	3% → 5%	중소·중견법인	5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이익 계산 방법 증여이익 = $\frac{\text{세후 이익} \times \text{초과 비율}}{\text{이익} \times \text{거과 비율} + \text{한계보유 비율} \times \text{자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 정상거래비율(30%)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법인: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 계산시 중소기업·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 • (일반법인) 1/2 적용 • (중소·중견법인) 1/2 적용배제 		

수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18②)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기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 공제율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70% • (공제한도) 최대 3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상속인 관련 사전 · 사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 2년 전 가업종사, 상속개시일부터 10년간 가업종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기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공제율 ·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100% •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상속인 관련 사전 · 사후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 · 사후요건 충족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수정이유 ▶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농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부가령 §84①)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사업자) <table border="1"> <thead> <tr> <th>매출규모</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4억원 이하</td> <td>매출액의 50%</td> </tr> <tr> <td>4억원 초과</td> <td>매출액의 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사업자) 매출액의 30% 	매출규모	공제한도	4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	매출액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사업자)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 (좌 등)
매출규모	공제한도						
4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	매출액의 40%						

수정이유 ▶ 공제제도 도입 초기에 소규모 음식점 등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공제한도 확대

② 치료 이외 미용 · 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 · 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유방암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등 성형수술 ② 악안면 교정술 ③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소모반 · 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 여드름 · 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기타 피부질환과 무관한 피부시술 ■ (시행시기) '14. 1. 1 이후 공급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범위 축소 및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②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 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 (좌 등)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 (시행시기) '14. 2. 1 이후 공급분부터

수정이유 ▶ 치료목적이 있는 의료용역을 제외하는 등 과세범위 조정

개별소비세법

1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개별소비세법 §1)

현행 (정부안 없음)	수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금액: kg 당 24원 * 시행령에서 탄력세를 적용

수정이유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2 렌터카 장기대여의 기준 완화(개별소비세법 §18①)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기대여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30일 초과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대여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 초과시 과세

수정이유 렌터카업계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대여 기준 완화

3 강원랜드(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시기 및 인상액 조정(개별소비세법 §1③)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행행위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7,000원 경마장: 500원 → 1,000원 경륜·경정장: 200원 → 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상시기 및 인상액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 ('14년~'15년) 5,250원 50% ↑ ('16년 이후) 6,300원 80% ↑ (좌 동) (좌 동)

수정이유 폐광지역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개소세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

주세법 시행령

1 일반소규모맥주 제조자 세부담 경감률 인상(주세령 §5①)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맥주 제조자 세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직전 주조연도 출고량 3,000kl 이하 사업자로서 출고량 300kl 까지 (경감률)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감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경감률) 30%

수정이유 중소맥주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세부담 경감률 인상

인지세법

2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인지세법 §3①)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권 과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만원: 비과세 → 100원 10만원 초과: 400원 → 8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만원권 상품권 세액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만원: 비과세 → 50원 (좌 동)

수정이유 저가 상품권 발행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만원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액을 인하

관세법

1 설탕 관세율 현행유지(관세법 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탕 관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기본세율 30% (개정) 기본세율 30%, 잠정세율* 20% *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세율에 우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세율 30%

수정이유 설탕 할당관세 적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율 유지

②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관세법 §264의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의 관세청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관세부과· 징수, 통관, 감면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제출기관· 자료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기관)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 여신전문금융협회 • (대상자료) 해외물품 구매내역 및 현금인출실적 • (제출주기) 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절차: 카드발행업자 → 여신협회 → 관세청

수정이유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내역의 조기 확보를 통해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 제고

③ 면세점 특허 할당 중견기업 범위 조정(관세법 §17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특허부여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비율(시행령: 60%)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일정비율(20%, '18년부터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좌 등)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자산총액 및 지분소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참여 확대를 위한 관세법 취지를 감안하여 중견기업 범위 조정

국세기본법

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국세기본법 §20조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 (주요 내용)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교세·감면제도 운용 방향 등

수정이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규정 신설

② 국세통계자료 공개 확대(국세기본법 §85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 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작성 •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용 및 연구목적 통계자료 제공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 간접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 • 통계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세청장은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통계자료 요구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

수정이유 국세통계자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조세범 처벌법

1] 세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조세범 처벌법 §17)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요건) 세법상 명령위반 및 협력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상한 인상 과태료) 2,000만원 이하 (좌 동)

수정이유 세법상 명령 이행 및 납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명령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2]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조세범 처벌법 §4의2 신설)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규정을 위반한 부정발급 (처벌수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정이유 면세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참고 II '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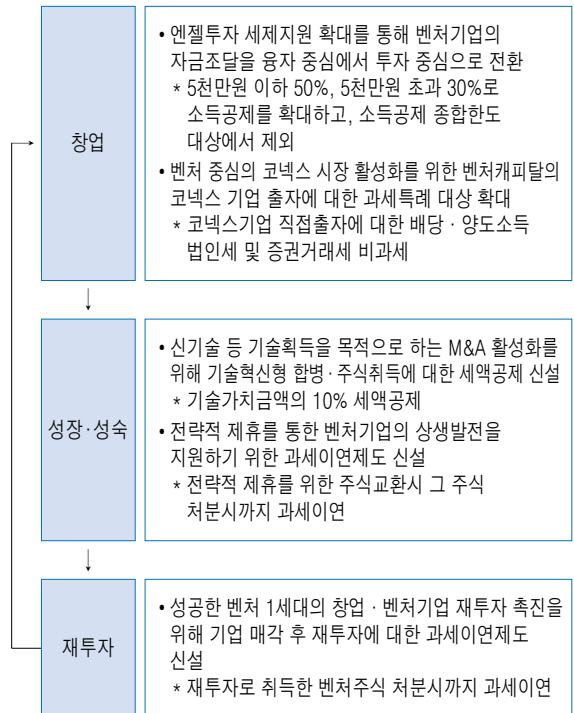
◆ 금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민생안정 지원 및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

1.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 5. 15.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상 세제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완비

- 이에 따라 「창업 → 성장·성숙 → 재투자」에 이르는 벤처·창업 생태계의 단계별 세제지원을 통해 선순환구조 정착 지원



-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창업·벤처기업의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하고,
 - 신기술 획득을 위한 M&A,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후배 벤처세대 양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공경험 전수와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기대효과) 향후 5년간 엔젤투자 0.5조원 증가, 벤처기업 매출액과 고용은 각각 1.7%p, 0.8%p 증가

2. 기업상속공제 확대

개정 내용

- 기업상속공제 확대
 - (적용대상)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공제율·공제한도) 70%, 최대 300억원 → 100%, 최대 500억원*
 - * 기업기간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상속인 요건 완화)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기업상속공제 허용
 - * 상속개시일 전 2년간 기업중사, 상속개시일 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등
- 세계적 장수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장수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개선
 -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하여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개정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 중소기업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의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 → 50%)·한계보유비율(3% → 10%) 완화, 정상거래비율 1/2 차감 배제
 - 중소기업에 한하여 간접수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간에 유사업종을 영위하면서 상호거래하는 등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

4. 양도세 증과폐지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개정 내용

- 양도소득세 증과제도 폐지·완화
 - 다주택자 증과 폐지: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 증과 완화: 60% → 기본세율+10%p 추가과세
 - * 단,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 없이 일 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 주택 단기양도 증과제도 완화: (1년 미만) 50% → 40%, (1년 이상 2년 미만) 40% → 기본세율

- 투기지역 내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기본세율+10%p) 제도 항구화

- 법인보유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 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법인세율+30%p → 법인세율+10%p
 - 중소기업의 경우 '14년 1년간 추가과세 적용 유예(법인세율만 적용)

- 부동산 가격 급등시절에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과도한 증과세 제도를 폐지·완화하여 양도세 과세체계를 정상화
 - 외국에도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하는 사례 없음
 - 다만, 부동산투기 재발가능성을 감안하여 투기지역 증과는 존치

- 주택·토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
 - 주택 관련 산업(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활성화로 서민·중산층 일자리 창출
 -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계층이 매수자를 찾아 파산위기에서 탈출 가능
 -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수요를 촉진시켜 전월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

5. 중산·서민층 주거지원

-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현행) 50% → (개정) 60%
 - 월세 소득공제한도 확대: (현행) 300만원 → (개정)

500만원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함으로써 임대료 하락 및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 유도

6. 과세형평성 제고

개정 내용

-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해 과세하기로 결정
 - * 과세시기·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

- 고소득 부농에 대한 과세
 -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과세
 - *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벼·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없음

- 종교인과 고소득 부농 과세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
 - 또한,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등을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대폭 확충
 - * 시행령 개정 사항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기본방향

- ◇ 12. 11(수) 부총리 주재 공운위에서 의결한 정상화 대책의 주요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정상화 추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전문가, 주무부처와 연계를 강화하여 발전적인 추진방향 모색

1 정상화 대책 주요 과제

과제 유형	주요 과제
정보공개 확대	① 알리오 검색기능 강화 ② 부실공시 점검 및 조사 강화
부채관리 강화	① 부채감축 가이드라인 마련 ② 구분회계제도 도입·확대 ③ 기재승인 강화 ④ 자산매각 방안 마련 ⑤ 경영성과협약제 ⑥ 예타사업 투자심의회 운영 ⑦ 사후평가제도 도입
방만경영 개선	①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 마련 ② 경영성과협약제 ③ 강소형기관 평가 ④ 비리 임직원 퇴직금 제한 ⑤ 기타공공기관 평가 ⑥ 기능점검
추진체계	① 정상화 협의회 구성 ② 기관장 워크숍 개최

2 추진방향

- ① 전문성 보강
 - 회계법인, 노동전문가 등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추진실적을 점검
- ② 기관의 자율적 추진 및 주무부처의 책임의식 제고
 - 기관 임직원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의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이행계획 점검과 추진실적 평가시에 참여하여 정상화 추진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
- ③ 지속적 모멘텀 유지
 - 정상화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과제별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 모멘텀을 유지
 - 과제별 최종방안 마련시에는 경제장관회의, 공운위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대한 대외적 메시지도 관리

참고 시기별 과제 실행계획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 공개/평가 등
'1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감축계획 가이드라인 및 관련 평가편람 마련 사후심층평가 및 구분회계 도입방안 마련 기채승인 관련 관계부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 및 관련 평가편람 마련 정상화협의회 Kick-Off 감사 평가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평가편람 수정 (강소형기관 평가 강화, 경영성과협약제 도입, 중간평가 근거 등)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
'14.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정상화 지원팀 구성 및 부채감축 계획 취합 예타대상사업 절차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만경영 정상화 지원팀 구성 및 중점관리기관 정상화계획 취합 기능점검 관련 부처협의 팀별성과급 관련 예산집행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공공기관 평가 지침 마련 및 정부 업무평가 연계 협의 이면합의 자진공시 경영평가단 구성
'14.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타 법적 근거 마련 (예타 투자심의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점검 관련 부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감사회의
'14.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타 세부운영지침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취합 (중점관리기관 이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사례 매뉴얼 마련
'14.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분야 이외 기능 점검 실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리오 개편 (검색기능 강화)
'1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심층평가 시범 사업 선정 		
'14.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기관 구분회계 정보산출·공개 6개기관 추가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합의 점검 (감사원 협조)
'14.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타통과사업 대상 재무적 타당성 검증 사후심층평가 시범 사업 운영 		
'14.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 심층평가제도 보완 		
'14.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실적 점검 구분회계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실적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평가 실시
'14.10월			
'14.11월			
'1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채승인 관련 개별 기관설립법 등 개정 		

II. 과제별 실행계획

1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 마련

1. 대책의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12년: 220%)에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부채감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지원팀 구성)** 민간전문가, 회계법인, 관계부처, 기재부 등으로 부채 정상화 지원팀을 구성하여 중점관리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점검

• 12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은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기재부에 제출하고

- * NH, 수공, 철도, 도공, 철도시설,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 석유, 광물, 석탄, 예보, 장학재단
- *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도 함께 제출

- 지원팀의 부채감축계획 점검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공운위에서 확정

■ **(중간평가)** 부채 감축을 위한 정상화계획 점검을 위해 ‘14. 3분기에 ‘14년도(‘14. 1~8월) 실적을 평가

-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 조치

2. 세부 실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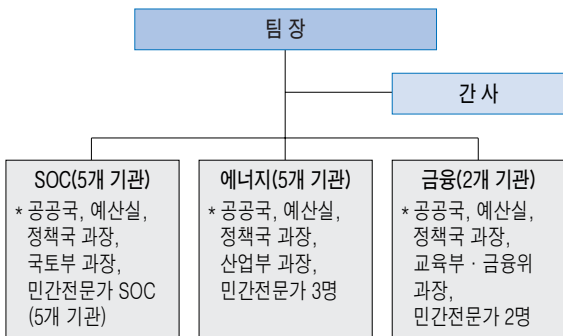
■ **(가이드라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경영평가단이 부채감축 평가지표와 연계해서 작성

- 평가단이 부채관련 평가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동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 작성
- *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원론적인 수준만 제시하고 평가지표 및 세부 매뉴얼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자산매각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면책하는 등의 내용 포함

■ **(지원팀)** SOC·에너지·금융 3개 분야별로 부채 정상화 지원팀 구성

- 기재부 담당과장(공공국, 예산실, 정책국), 주무부처 담당과장(국토부, 산업부, 금융위, 교육부), 회계사·재무전문가 등 20명 내외
- 특히 지원팀 중 민간전문가는 정상화협의회 자문위원으로 겸직하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 기관이 부채감축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협의하여 '14. 1월말 제출시 단시간 내 승인이 가능토록 추진 - 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과 함께 제출시기도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간 경쟁을 유도

2.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마련

1. 대책의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8대 유형별 방만경영 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시정이 필요한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하여 개선사항을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
- **(지원팀 구성)** 민간전문가, 회계법인, 관계부처, 기재부 등으로 방만경영 정상화 지원팀을 구성하여 중

점관리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점검

-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기관*별로 정상화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14. 1월말까지 '정상화협의회' 에 제출

* 마사회, 인천공항, 대주보,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GKL,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예결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보, aT, 코스콤, 수은,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부산대병원, KIC

- **(중간평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정상화계획 이행 점검을 위해 '14. 3분기에 '14년도('14. 1~8월) 실적을 평가

-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 등 강력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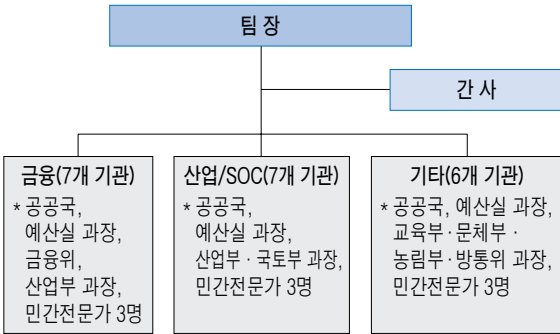
2. 세부 실행계획

- **(가이드라인)** 경영평가단이 방만경영 평가지표와 연계해서 작성

- 가이드라인의 위반사항 등에 대해 평가하는 점을 고려
 - 평가단이 방만경영 관련 평가 지표와 평가 세부 매뉴얼을 확정하고 동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 작성
- * 기관장이 방만경영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면책하는 내용 포함

- **(지원팀)** 금융, 산업/SOC, 기타 3개 분야별로 방만경영 정상화 지원팀 구성

- 기재부 담당과장(공공국, 예산실), 주무부처 담당과장(국토부, 산업부, 금융위, 교육부), 노무사·노무전문가 등 20명 내외
- 특히 지원팀 중 민간전문가는 정상화협의회 자문위원으로 겸직하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협의하여 '14. 1월말 제출시 단시간 내 승인이 가능토록 추진
 - 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과 함께 제출시기도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간 경쟁을 유도

3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 마련

1. 대책의 주요 내용

- ① (경영성과협약제)** '14년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이 경영성과 협약* 체결시 경영목표에 부채감축 노력 및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
 - *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3년 단위로 체결하고, 임기 중 1회 평가하여 연임 여부 등 인사자료로 활용
 - 기관장의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리 노력을 집중 평가하고, 주무부처는 상시 점검
- ② (강소형기관 평가)** 방만경영을 제어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강화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등 방만경영 개선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 실시
 - * 현재 강소형기관(총평가대상 117개 기관 중 자산 1조원 미만, 정원 500인 미만인 55개 기관)은 평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업 성과 중심으로 평가

- ③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적합한 평가를 시행하되, 인사·재무 등 경영관련 사항에 관한 평가를 의무화
 - 주무부처는 기타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공운위에 보고
 -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을 정부부문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함

2. 세부 실행계획

중간평가 실시

- 공운법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의 일환으로 중간평가를 실시('14. 3분기)
 - 중간평가는 '14년도 경영실적평가 지표 중 '재무 예산관리 및 성과'와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지표를 평가
 - '15년 정규평가지기 평가한 내용 반영
 - '14년도 경영평가편람에 중간평가 시행 근거 마련 (12. 31)
 - 평가단이 작성하는 부채 및 방만경영 관련 가이드라인은 부채 관리와 방만경영 평가지표 작성에 충실히 반영
 -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 실시
 - 부채 중점관리 기관 18개, 방만경영관리 기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부채관리와 함께 방만경영도 평가
- ### 경영성과 협약제
- '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12. 31)
 - 기관장 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체계는 「공통과제

- 와 성과과제」 2개 범주로 구성 예정
- 공통과제는 기관장이 조직운영을 위한 리더십, 책임경영으로 평가지표를 구성
- 성과과제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중장기 전략과제로 구성

■ 특히, 30개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 대상기관은 기관장의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강화

* 38개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 대상기관 중 8개 기타공공기관을 제외

- 평가가중치는 30개 중점 부채·방만경영관리 대상기관의 경우 40점, 기타기관은 30점(100점 만점)으로 부여 예정

강소형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평가

① **(강소형기관의 방만경영 제어)** '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12. 31)

-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신설(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평가 가중치: (현재) 3점(55점만점) → (개선) 8점(65점만점)
(총인건비 인상률) (보수·복리후생, 노사관리 추가)

② **(기타공공기관 평가)** 주무부처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침을 작성·제공(1월)

- 평가지침은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중 강소형 기관 평가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
- 기재부는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이 정 부업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 협의 (1월)

평가단 구성

- '14년 경영평가단을 조기에 구성(1월말)
- 인터넷과 시민단체·노조를 대상으로 공모, 부처

추천을 받고, 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 경험자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직업별로 회계사, 교수, 노무사, 변호사, 언론인, 전직 공무원을(기재부,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관련 업무 경력자) 균형 있게 선발

- 방만경영 관련 지표 평가를 위해 노무사,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 비중을 대폭 확대(기존 방만경영 관련 지표 평가위원 3명)

- 이번 평가단은 일부 기관장의 해임도 예상되는 중간평가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윤리성 제고를 위해 기관대상 강의·용역 수임 등의 실적을 정밀 검증
- 평가단장 이외에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정상화 대책 이행실적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 검토
- 부단장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전직 공공기관 CEO 등을 선임하는 방안 검토

4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 마련

1. 대책의 주요 내용

① **(구분회계)** 부채 발생원인별로 구분 계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금년 내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 구분회계 정보 산출

- 부채관리의 중요성, 기관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7개 시범기관의 구분회계 도입방안 마련 ('13년말)
- 기관별 내부 회계시스템 수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구분회계 정보산출('13년 결산실적 산출)
- '14년중 6개 기관(도공, 철도공단, 석유, 광물, 석탄, 장학재단) 추가 확대 시행

② **(기채승인 강화)** 불요불급한 공사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

- 중점관리 12개 기관은 주무부처에 기채승인을 받도록 조치

- * 현재 LH·수공 등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주무부처가 사전 승인
- * 예보·장학재단의 경우 채권발행시 보증동의를 정부와 국회에서 심사·승인받고 있으므로 별도 기재승인권 불필요

③(예타제도)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추진

- 공공기관 예타제도와는 별도로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투자심의회* 등) 마련
- * 당해 기관이 내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하여 운용

④(사후평가)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추진

- 금년 말까지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선정

2. 세부 실행계획

구분회계

- 7개 시범도입기관 구분회계 도입방안 확정(12. 31)
 - 구분회계 TF 구성, 운영을 통해 구분회계 관련 협의 추진
 - * 기재부, 주무부처(산업부, 국토부, 중기청), 조세연, 회계법인 등
 - 시범도입기관 사업구분단위 확정, 공공기관 의견 수렴 후 필요시 시범도입기관을 위한 구분회계 적용지침 마련
- '14.상반기, 7개 시범도입기관의 구분회계 정보 산출, 공개
- '14.상반기, 정상화 대책에서 확정된 6개 추가 도입 기관에 대한 기관의 구분회계 도입안 제출, 검토
 - * 6개 추가 도입기관에 대한 사업구분단위 결정은 시범도입기관 구분회계 정보 산출 이후 문제점 보완을 거쳐 확정

기채승인 강화

- (조치 필요 사항) 주무부처의 기재승인권은 기관의 설립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별도 입법조치 필요
- (입법 대상 기관)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
 - * 한전, 석유, 가스, 석탄, 광물, 한수원, 발전 5사, 예보기금
- (향후 계획)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방안과 입법 시기 등에 대해 논의
 - * 상반기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정부입법안 제출

예타 내실화 및 예타사업 투자심의회 운영

- 예타의 법적 근거 마련
 - '14. 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를 규정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법 개정 후속으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대상사업 규모 및 법에서 위임한 예타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운영지침의 근거를 규정
- '14. 1분기까지 예타제도 세부운영 지침 제정
 - 예타 세부추진 절차, 면제절차,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재정사업 예타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
- 투자심의회 설치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별 대규모 사업 추진절차를 파악('14. 1월까지)하고, 부채 관리 가이드라인에 포함

사후평가제도

- 사후평가제 제도 도입방안 마련(12. 31)
 - 제도 도입방안 확정 및 3개 내외 시범사업 선정

- '14년 중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제도 보완
 - 시범사업 운영과 병행하여 사후평가지침, 세부 매뉴얼 등 마련

5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 마련

1. 대책의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상시적으로 제거
 - 공공기관별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기능 확대, 민간부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유사·중복기능 등을 축소·조정
 - * 합리화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① 정보화, ② 중소기업, ③ 해외자원개발, ④ 고용·복지 등 4대분야 기능조정부터 우선 추진

2. 세부 실행계획

- 해외자원개발 분야 기능조정을 부채감축계획과 연계하여 조속히 완료
 - 3개분야(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는 순차적으로 추진
- 문화관광 분야, SOC, 농업 등 여타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 추진

6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 마련

1. 대책의 주요 내용

- 부채 순위별 검색, 유형별·주무부처별 검색,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자료의 검색 등 검색기능 강화
-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 없는 부실 공시 등을 집중점검하여 발견시 제재 강화
 - 이면합의 등을 '14. 1월말까지 공시토록 하고, 상반기 중 집중 감사하여 미이행 등 적발시 기관장 임중 문책
 - 공시점검을 상시화하고 점검 항목을 확대, 불성실·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 실시

2. 세부 실행계획

- **(검색기능 강화)** 알리오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 부처별 검색기능 추가
 - 재무정보 등 주요 항목의 5년 이전 과거 자료* 조회기능 추가
 - * 5년 이전 자료는 알리오시스템상에 백업자료 형태로 보관중
- **(점검강화)** '14. 1월까지 공공기관들이 이면합의 등을 자진 공시하도록 공시
 - 공시점검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점검 항목은 현재 3~4개에서 부채·복리후생 관련 주요 항목으로 확대
 - 다만, 충실한 공시 점검을 위해서는 알리오 전담 인력의 보강 필요(현재 1인이 운영)
- **(일정)** 검색기능 강화와 과거자료 조회 기능 추가는 4월말까지 완료
 - 감사원을 통한 이면합의 점검은 상반기 중 실시

7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 마련

1. 대책의 주요 내용

- 공운위 산하에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별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2. 세부 실행계획

- **(구성)** 기재부 2차관(주재), 관련 부·처·청위원회 관련 1급*(책임관으로 지정), 민간전문가 6명 등으로 구성

* 총 34개 부처 51명

- 다만, 각 부처의 책임관은 해당 부처 안건 상정시에만 참석
- 민간전문가는 부채관리, 노동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 부채 등 구조조정 1인, 재무회계 1인, 노동분야 법률 1인, 공공기관 전직 CEO 1인, 언론·시민단체 1인, 공운위원 1인

- **(회의 개최)** 원칙적으로 월 1~2회 개최하되, 1차 회의시 정상화대책 실행계획 상정·논의(12. 27일 기 개최)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연 8,000억 탈세 면세유 제도 수술

정부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유통도 심각한 면세유 세제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세제 개혁의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3개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의 지속적인 증가, 부정수급, 재정지출과의 이중혜택 등이 문제되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월 중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차액을 노린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농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돌리거나 출항하지 않은 소형어선이 면세유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자원경제학회 등에 따르면 면세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면세유의 농어민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망기준으로 면세유의 조세감면액이 연간 1조 6천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면세유로 유류세 100원을 감면하더라도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56원 정도다.

학계에서는 면세유 등 간접세 면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해당 계층에 보조금 등 형식으로 재정을 지출하라는 지적이 많다.

〈세계일보, 2014-01-13〉

면세유 주요 문제점

세금 탈루액 연간 7,000억~8,000억원
 • 농어민이 주유소 등과 짜고 서류와 사용량 위조해 면세유 빼돌려 차액 챙기기
 • 면세유를 농·어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서 이득 보기

농어민 혜택 생각보다 크지 않음
 • 농어민 소득증대 효과 유류세 100원 감면당 56원
 • 나머지 혜택은 정유사·주유소·농수산물 소비자

자료: 자원경제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낭비 없애고 경제 살리는게 우선... 그래도 재원 부족하면 증세 논의”

[최대통령 신년회견/경제혁신 3개년 계획]
 ‘증세는 없다’ 원칙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증세(增稅)는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

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도 여전히 복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민 합의를 전제로 증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말하기 전에 비과세나 세금 감면 등 중간에 새는 낭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증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조세부담률을 2012년 20.2%에서 2017년 21%로 5년 동안 0.8%포인트 상승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자주 거둬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세수(稅收)가 늘어난다”며 “이 경우 일자리나 가계부채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합의를 통한 증세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진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과 조세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등을 설치해 의견 수렴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 수준이 현재 세수 규모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대로 53조원을 마련해 복지공약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만 7조~8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소득세율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을 하향조정해 ‘부자 증세’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통령 회견은 우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만약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에 나서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과 같은 맥락”이라며 “향후 재원이 부족해 복지 공약 이행과 증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4-01-07)

한국 공공의료비 비중 55%... OECD 35개국 중 최하위권

우리나라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5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부연구위원은 12월호 『재정포럼』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소고」에서 전체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11년 기준 한국은 55.3%로 OECD 국가 평균 72.2%보다 17%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이는 칠레(46.9%), 멕시코(47.3%), 미국(47.8%) 등에 이어 최하위 수준으로, 35개 국가 중 32등에 해당한다.

비교 대상국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85.6%)였고, 덴마크(85.3%), 노르웨이(84.9%), 체코(84.2%)도 상위권에 속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그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말 발표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2013년 기준 1인당 94만원이던 4대 중증질환 환자부담금이 34만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을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된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 선택 진료비·상급병실차액·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보장성 확대 대상에서 빠진 것, 9조원에 이르는 재원조달방식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 2014-01-01)

지침상 호봉제 허용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사업 축소와 정원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13-12-31)

“공공기관, 직접고용 전환 땀 1,689억 절약”

공공기관이 용역과 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수천억원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의 재정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에 간접고용된 용역·파견 근로자 전원을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할 경우, 연간 1,689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경비·청소·비서·운전 등 간접고용 업체에 지출한 비용을 연 2조 61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인건비가 75.9%, 용역업체에 보장해 준 이윤이 4.5%, 간접비가 19.7%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바꾸지 않고 자회사를 세워 정규직화할 경우, 용역업체에 보장해주는 이윤(연 918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접비에서는 연간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1,407억원)과 부가가치세(1,873억원)를 제외한 771억원을 아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6,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분야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처우도 개선됐지만 민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경비가 줄다보니 예산 지출은 오히려 53억원 감소했다.

보고서는 전환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하면 민간에 견줘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예산 편성

재정포럼

2014년 1월호 통권 제21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14년 1월 15일 발행 / 제18권 제1호(통권 제21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